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2. 5. 23. ~ 6. 3.까지 9일간 2개반 14명이 참여하여 2019. 3.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상수도 사업본부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37건(본처분 34건, 현지처분 3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처분요구를 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 발굴한 수범사례 3건을 공개함으로써, 산하 전 기관의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사결과

구 분	계 (건/명)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건/천원)			신분상 조치(건/명)			기관 경고 (건)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소계	감액, 회수, 정수	환급, 시효 결손	소계	경징계	훈계	
계(건/명)	48/18	48	14	22	12	6/ 347,261	5/ 337,835	1/ 9,426	9/18	1/2	6/16	2
본 처 분	45/18	45	12	21	12	6/ 347,261	5/ 337,835	1/ 9,426	9/18	1/2	6/16	2
현지조치	3/-	3	2	1	-	-	-	-	-	-	-	-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목록】

인천광역시 권 고

제 목 공무직 순환전보 소홀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직 정·현원은 [표]과 같다.

【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직 정·현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정원	현원	결원	비고
상수도사업본부	212	182	3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총괄 부서의 장과 정원관리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직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복무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전보, 해고, 퇴직 등 제반 인사상의 변동 사항은 인사부서와 사용부서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0**년 **월 **일 체결된 “20** 단체협약서”상에는 전보와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 없으며, 같은 협약 제3조에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및 노동관행에 따른다.”라고 협약되어 있다.

또한, ★★과의 20**년도, 20**년도 “공무직 정기인사 계획(안)”에 따르면 “단순 조무원 및 시설관리원 위주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순환전보 대상 외 직종은 1:1 매칭 전보”를 실시하되 “동일직종(직능) 내 전보 원칙”과 “개인 인사고충 등을 통한 매칭 범위 내 적임지 배치”하고, “소방본부·의회·직속기관·사업소는 기관

(본부) 단위 발령으로 인사운영 자율권 부여를 통한 효율적 인력운영 도모”를 인사기준으로 삼았다.

“순환보직”에 있어 잦은 순환보직은 ‘업무의 연속성 및 책임성 저하’, ‘업무 파악 및 숙지 저해’, ‘전문성 축적 저해’, ‘신규 보직 부적응’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원격지에 위치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과 한정된 직종(직능) 등으로 인해 일부 순환전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현 보직 장기근무에 따른 ‘업무침체 방지’, ‘창의적 직무수행 유도’, ‘업체 유착 방지’, ‘선호·비선호 기관 순환보직을 통한 형평성 제고’ 등의 순 기능도 있어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순환보직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전보 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시(대법원 선고 2007두 20157) 하고 있어, 공무원의 전보에 있어 상당부분 사용권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총△△명은 1개 보직에서 10년 이상 장기재직 하고 있고, 25년 이상 장기재직자도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재직자들의 관사 장기 사용 관련 ‘관사의 사유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효율적인 공무원 인력운영 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권고] 공무원 순환전보 기준 등을 포함한 “공무원 인사운영계획”을 수립·시행 하여 효율적인 공무원 인사운영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 주의 요구

제 목 ☆☆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사업개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에 대하여 20**년 *월 A사와 계약을 맺고 20**년 *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2. 관련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 등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지적사항

가. 지하수 차단 가시설(Sheet Pile) 설계변경 소홀

☆☆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공사 설계도서에는 관로 터파기에서 지하수 차단 가시설이 00m 계상되어 있으나, 동 가시설 적용구간에 대한 시험 터파기에서 지하수가 발견되지 않아 경제적 시공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토질을 검토하여 지하수 차단 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개착식으로 시공을 결정하였다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하도록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 공사 감독자에게 실정보고하여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보고 없이 시공함으로써 개략 00천 원(제경비 포함)의 사업비를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나. 도로 굴착 폭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소홀

☆☆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 설계도서에는 굴착 공사 시 굴착 폭 B₁m에 구배 1 : 0.5로 계상 되어 있으나, 시공사에서 차량 통행과 시공성을 감안 굴착 폭을 B₂m로 변경하여 시공을 요청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굴착 폭에 대하여 안전성 및 경제성을 검토함에 굴착 폭을 B₂m로 변경 시공하여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어 폭 변경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하도록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 및 공사비 증감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 공사 감독자에게 실정보고 하여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보고 없이 시공함으로써 개략 00천 원(관급자재 포함)의 사업비를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정] ☆☆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에서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는 지하수 차단 가시설 및 도로 굴착 폭 감소에 대한 00천 원을 감액 설계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지역 배수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사업개요

상수도사업본부 ○○부에서는 “☆☆지역 배수지 건설 공사”에 대하여 20**년 *월 A사와 계약을 맺고 20**년 **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2. 관련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 등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지적사항

가. 보강토 옹벽 축소 시공에 따른 설계변경 소홀

☆☆ 배수지 건설공사 진입도로 성토 사면부 경사(구배) 구간 보강 대책으로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도록 설계도서에 계상 되어 있으나, 보강토 시공 중 일부 구간에서 암반이 노출되어 보강토 옹벽 설치 없이 자연 구배로 변경 시공 가능하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연 구배로의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 및 공사비 증감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실정보고하여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보고 없이 시공함으로써 개략 00천 원(관급자재 포함)의 사업비를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나. 현장 발생암에 대한 사토처리 설계변경 소홀

☆☆지역 배수지 건설공사의 연암(사토) V_1m^3 에 대하여 현장으로부터 L_1km 를 운반 처리하도록 설계도서에 계상되어 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건설공사 골재 재활용을 위하여 토석(연암) V_2m^3 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 매각 처리하였다면, 토석 매각에 따른 사토(반출 토사) 운반비를 무대로 설계변경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변경 하지 않고 있어 사토(반출토사) 운반비가 물가변동(ES) 조정율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설계변경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토석(풍화암) V_3m^3 에 대하여 당초 배수지 현장 내 야적하기로 설계 도서에 계상되어 있으나 현장 내 야적장 공간 부족으로 토석(풍화암) V_4m^3 를 임시 야적장(★★★)으로 소운반(☆☆배수지: V_5m^3 , $L=L_2km$, 무의배수지: V_6m^3 , $L=L_3km$)

하고, 잔량 V_7m^3 를 현장에서 직접 사토(반출)하는 등 당초 시공계획을 변경 시공하였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하도록 검토하여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 및 공사비 증감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실정보고 하여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변경사항에 대한 실정보고 없이 시공으로 개략 00천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정] ☆☆지역 배수건설 공사에서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는 보강토
옹벽 축소 시공 및 현장 발생암에 대한 사토처리 00천 원을 감액 설계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 개선 요구

제 목 고도정수처리 활성탄 성능평가 및 교체(재생)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상수도사업본부는 일반정수처리공정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수돗물의 맛·냄새물질, 소독부산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일반정수처리공정에 오존처리, 활성탄 처리 등의 공정을 추가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정수장 등 2개 정수장에 도입한 후 이를 운영하면서 핵심 자재인 입상활성탄(이하 “활성탄”이라 한다)의 흡착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이를 재생하거나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1. 활성탄 성능평가 검사 소홀

★★★★사업소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매뉴얼(2016. 11. 제정, 2021. 12. 개정)」에 따르면 활성탄은 운전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처리 목표물질 제거율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흡착력을 나타내는 요오드 흡착력을 매월 검사하고, 요오드 흡착력이 일정값(600mg/g) 이하로 내려갈 경우 등에는 활성탄의 오염물질 흡착 제거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활성탄 재생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소는 매월 정기적으로 활성탄의 요오드 흡착력을 검사하여 활성탄의 흡착력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검사 결과 일정기간 계속 요오드 흡착력이 600mg/g이하로 떨어진 경우 등에는 활성탄 재생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수장은 활성탄 요오드 흡착력 성능평가를 2016. 11. 운영매뉴얼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시험하지 않았으며, 20**. *.부터 규정과 달리 반기 1회 주

기로 성능평가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한편 ♀♀정수장에서 2021. 12. 제정한 「고도정수처리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활성탄 요오드 흡착력 성능평가 주기를 분기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수장의 매뉴얼에서 정한 성능평가 주기와는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고도정수처리 공정의 핵심 자재인 활성탄의 요오드 흡착력 검사 주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규정 또한 각 정수장별로 제각각 운영함으로서 활성탄의 요오드 흡착력이 600mg/g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이를 제때 알 수 없어 활성탄을 재생 또는 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장기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우려가 있다.

2. 활성탄 교체(재생) 기준 수립 및 운영 미흡

「고도정수처리시설 성능평가 및 운영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 2021. 12. 제정)」에 따르면 활성탄 교체 조건 등의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기준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인자는 ① 수질목표 달성 안정성, ② 활성탄의 종류(재질, 신탄, 재생탄) 및 품질 시험결과, ③ 가동기간 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매뉴얼」에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인자와 타 지자체 사례, 기술검토 등을 통하여 활성탄의 교체 조건 등의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매뉴얼」과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매뉴얼」의 활성탄 교체기준을 살펴보면,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발췌하거나 참고하여야 할 내용들을 나열하여 기재하였을 뿐 고도정수처리 현장에서 실무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성능 발휘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운영매뉴얼의 수립 및 운영에 미흡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주의] 입상활성탄의 요오드 흡착력을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매뉴얼」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입상활성탄의 흡착력을 확보하는 등 입상활성탄 품질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성능 발휘와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매뉴얼」의 활성탄 교체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정수장 등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 이행사항 조치 미흡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상수도사업본부는 운영 중인 정수장 등 수도시설에 대한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 요인 분석, 각 공정 상호 간 기능검토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방안 등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최고의 품질과 맛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자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진단을 시행하였다.

「수도법」 제74조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한강유역환경청)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르면 ① 기술진단 결과의 보고: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 ② 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 ③ 시설개선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시행 후 30일 이내에 인가관청(한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하도록 기한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정수장 등 수도시설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진단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기술진단 보고서에 개선이 필요한 이행사항 및 비용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 등 3개 정수장의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연 처리하였으며, ★★정수장 등 9개 시설의 기술진단 시행 결과는 인가관청(한강유역환경청)에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정수장 등 9개 시설의 기술진단 결과 개선 이행사항 ◎◎◎건 중에서 △△건만 정상 시기에 적기 조치 완료하고, 나머지 ▽▽건은 개선 시기와 맞지 않게 앞당기거나 지연 조치, 미조치하는 등 정수장 등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 에서 도출된 개선사항 등 문제점 해소를 적정하게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주의] 기술진단 결과에서 제시한 개선 이행사항에 대하여 시기와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수도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주의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상수도관망시설 관세척 배출수 처리 소홀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수도사업소 외 3개 사업소

내 용

「수도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수도관망정비계획 및 목표 유수율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상수도관망의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환경부 고시, 2021. 2. 26. 제정·시행)」 제5조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관세척을 시행할 때는 관 내부 상태를 내시경 또는 시편채취 등으로 점검·분석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물리·화학적 방법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관세척시 발생하는 배출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고, 배출수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배출수는 휴대용 유량계 등을 설치하거나 블록 유량계 등을 활용하여 수량을 측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같은 고시 제6조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배출수 처리시 배출수의 오염도 (저오염도, 중오염도, 고오염도)를 구분하여 최적관리기술¹⁾(BMP, Best Management Practice) 기반의 적정처리방안을 설정하여야 하며, 하수처리구역의 경우 배출수의 처리는 합류식 관로 또는 분류식 관로의 오수관 투입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및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한 후 배출수를 유입시켜야 한다.

그리고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경우 배출수 처리는 배출지점 및 방류수역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생태환경의 위해성 및 수질에의 영향이 없도록 배출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 세척수 중 잠재적인 오염물질이 하천 유입 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척 작업 전부터 작업을 마친 후에도 세척 절차 및 세척수 관리에 관련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수도관 세척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등 4개 사업소에서 시행한 *건의 상수도관 세척 사업의 배출수에 대한 처리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① 배출수에 대한 적정처리 방안 설정 등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② 시공 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및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고, ③ 배출수 약 00m³에 대한 수량을 측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하지 않는 등 주의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1) 최적관리기술은 상수원 보호구역 여부, 방류수역까지의 유하거리, 배출수량, 배출지점의 토사침식 여건, 배출지점의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출수의 특성에 맞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각 단계별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환경부, 2021)」 14.4. 상수도관 세척수 처리에 정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주의] 상수도관 세척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배출수에 대한 적정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시공 전 공공하수도관리청과 사전 협의하는 등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사고 관련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정수사업소, ★★정수사업소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주는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3조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및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정수사업소)에서는 2021년 7월 수돗물

유충사고²⁾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활성탄지 지별 유출배관에 미세거름망을 장착한 유충차단장치를 설치하였고, 유충차단장치(미세거름망)의 유지·관리를 위해 약 2주를 주기로 담당직원이 직접 배관에 올라가 미세거름망을 고압수로 세척하거나 미세 거름망의 파손이나 상태확인 및 교체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충차단장치의 작업 장소인 배관은 바닥으로부터 약 2m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 형태는 둥근 모양이며, 물기가 있어 담당직원이 작업을 하다가 추락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유지·관리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정] 유충차단장치(미세거름망)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 2020년 7월 발생한 유충(깔다구)을 말함

인천광역시

주의(훈계)요구·통보

제 목 건축물 감리용역 관련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부(이하 “○○○○부”라 한다)에서는 강화군 ○○○면 ○○○리 ***-**-***번지 상에 ☆☆☆☆사업소 관사를 신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소 관사 신축공사 감리용역(이하 “감리용역”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 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제2절 “1”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며, 용역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사업소 관사 신축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이하 “과업지시서”라 한다)에 따르면 본 과업지시서는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과업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하며,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용역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공사감리자 품질관리 소홀

과업지시서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토록

하고 있다.

(건축)시방서에서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며,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하고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레미콘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인수자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나 해당 공사의 레미콘송장에 도착시간, 인수자 등이 기입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특별한 조치 없이 송장확인 검사결과를 적함으로 표기하여 ‘공종별 감리체크리스트³⁾’를 ○○○○부에 제출하였다.

2. 공사감리자 감리업무보고 소홀

과업지시서에 따라 ‘공사감리중간보고서’는 감리자가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완료보고서’는 감리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주 1회(매주 목요일) 주간 보고를 매월 1회(매월 5일)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한 월말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공사감리자는 발주청인 경영관리부에 월말보고, 중간보고, 공사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3. 공사감리자 검사업무 소홀

과업지시서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등 검사에서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 합격필증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 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리자는 배수설비, 절수설비, 가스보일러 등에 대한 관련 서류 및 필증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공사시공자에게 특별한 시정요구나 조치 없이 감리원 준공 감리조서를 제출하였다.

3)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1] 단계별 체크리스트 대장을 말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9호)
‘강화수도사업소 관사 신축공사 감리용역 감리완료 보고서’에 첨부

위와 같이 과업지시서 등에서 공사감리자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 및 자료제출을 소홀히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부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특별한 시정지시·촉구 또는 보완 요구 없이 감리용역을 준공 하였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 [주의] ① 향후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서류가 적기에 제출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② 계약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용역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통보] ☆☆☆☆사업소 관사 신축공사에 참여한 공사감리자 등에 대하여 관련규정 위반사항 및 부실정도 등을 측정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취·정수장 대용량 펌프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취·정수장 대용량 펌프 유지관리 업무수행 개선 필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수돗물 생산원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펌프의 운전 동력비(전력요금)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펌프의 효율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불량한 곳은 개량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에 노력하여야 한다. 펌프의 적절한 유지관리는 원활한 운전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그 상태가 기기의 성능 및 수명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다. 펌프의 보수에 있어서는 각자가 펌프의 기능 및 성능을 잘 알고 항상 양호한 상태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4개 정수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는 대용량 취·송수펌프 관련하여 ○○○○부에서는 취·송수펌프 성능진단 및 효율개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현재 4개 정수사업소에서는 5년에 1회 정수장 기술진단 시 펌프 효율을 측정하고 있으며, 일일점검을 통한 이상소음 발생이나 고장발생 시 펌프의 오버홀⁴⁾이나 수리를 진행하는 실정이며, 펌프 효율 저하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담당자의 판단이나 내용연수 경과 여부를 근거로 펌프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이 떨어진 펌프(효율 70%대 펌프, 다만 펌프의 설치 환경에 따라 적정 효율에 대한 검토 필요)를 계속 운전하여 발생하는 동력비 낭비를 방지하기

4) 오버홀(Overhaul): 설비 분해 후 점검 및 보수

위해서는 매일 전력원단위⁵⁾(kWh/m³) 분석을 통한 펌프 효율의 저하 여부를 추적 관찰하고, 전력원단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펌프를 자체 보유한 열역학적 펌프효율 측정 장비를 이용하거나 전문 측정업체를 통한 효율 측정으로 펌프의 오버홀이나 교체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2. 펌프, 교반기, 인버터 등 교체시 국비지원 신청 노력 필요

「수도법」 제21조제9항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배출권거래제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내용연수가 도래한 저효율 펌프나 각종 교반기 및 인버터 교체 시 해당 사업이 국비 지원 대상이므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 [개선] ① 연간 정수사업소별 취·송수펌프 유지관리 계획 수립, ○○○○부 취·송수펌프 성능진단 및 효율개선 계획 수립, 효율 저하 의심 펌프 효율 측정, 수리나 교체 후 결과 분석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② 대용량 펌프의 유지관리 업무를 개선하여 수돗물 생산원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용량펌프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정수장 설비의 교체 시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되므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5) 전력원단위(kWh/m³): 물 1톤을 보내는데 소비되는 전력량

인천광역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정수장 외 *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부(이하 “☆☆☆☆부”라 한다)에서는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정수장 외 *개 정수장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20**년 ~ 20**년 해당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용역을 시행하였다.

1. 용역의 일시정지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① 용역의 수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③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책임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 **.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업무를 ●●부로부터 이관받은 ☆☆☆☆부에서는 용역 완료기한(20**. *. **.) *일 전인 20**. *. **. ‘정수장 협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이라는 사유로 구체적인 정지기간에 대한 통지 없이 용역을 일시정지한 후 ***일이 지난 20**. **. **. 용역 재개하고 20**. **. **. 계약금액 변동 없이 용역을 완료처리 하였다.

그러나, ☆☆☆☆부에서 용역 일시정지한 날로부터 **일이 지난 20**. *. *. 계약상대자가 용역 공정률(실적)이 **.*%(계획공정 100% 달성)라고 제출한 제△회 기성부분 관련 자료를 검사한 결과, ① 정수장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 불일치, ② 분야별 성능평가·기능진단·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사항에 대한 현황 불일치, ③ 성과품 작성 관련 정수장 협의 미완료 등의 사유로 공정률(실적)을 **%만 인정하는 등 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용역의 정지사유가 발주기관의 책임인지,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지연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기 전에 용역을 재개하여 발주기관의 책임인 경우에는 용역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인 경우에는 용역 완료기한 지체일수를 산입하여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없이 용역을 일시정지한 후 ***일이 지난 20**. **. **. 용역을

재개하고 그로부터 *일 뒤인 20**. **. **. 용역을 완료하는 등 용역의 일시정지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였다.

2. 용역 완료검사 업무 소홀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르면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은 「수도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용역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경우 전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 사전조사기간에 ‘○○정수장 외 *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 수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인 ‘기술진단보고서’를 ☆☆☆☆부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용역 완료 검사 결과 보고할 당시에 첨부한 성과품 납품 사진과 감사자료 요구를 통해 제출 받은 ‘기술진단보고서’의 겉표지가 서로 달랐으며, 보고서 내 용역에 참여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서명·날인도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용역 과업지시서 상에 성과품의 납품시기를 확인한 결과,

최소 용역 완료 1개월 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중간 검토(정수장·분야별 지정 감독관 경유)를 받아야 하며, 수정·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계약기한까지 납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 **. 용역 완료검사 이후 ‘기술진단보고서’ 내용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실시하여 ① 정수장 현황과 맞지 않는 공정 및 시설현황, ② 분야별 시설현황과 시설개선계획 불일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어 계약상대자를 통해 이를 수정하다가 종합감사 사전조사기간에 이를 지적받아 용역 완료 후 *개월이 지난 20**. *. **. 되어서야 용역에 참여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서명날인한 최종 성과품을 납품 받는 등 용역 완료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해, 「수도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 기술진단 결과를 인가관청(한강유역환경청)에 알려야 하는 법정 보고 기한을 **일 초과(20**. *. **. 보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주의] ①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규를 숙지하여 용역의 일시정지 및 용역 완료검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요구

제 목 ☆☆☆시설 전력계통 이중화 구축사업 전기감리용역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사업소

내 용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는 정수장 전기시설물의 내구연한 경과·전기적인 절연 저하 등 장애 요인으로 인한 정수장 가동중단, 계획단수(정전) 발생 시 불출수 및 수질 등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 ☆☆☆시설 전력계통 이중화 구축사업(전기공사)과 연계하여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전기공사를 완성하고자 전기감리용역을 시행하였다.

1. 공사 설계도서 검토업무 소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8조에 따르면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와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한 공사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작 전에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리원은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공사 착공 *일 전인 20**. *. **. 전기감리용역을 착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사기간 ***일 중 **일이 지난 20**. **. **. 되어서야 실정보고(제*회)를 통해 설계도서에 누락된 전력 및 제어케이블 등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검토 보고하는 등 해당 공사 시작 전에 이행했어야 하는 감리원의 공사 설계도서 검토 및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공사의 공정관리 업무 소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3조, 제44조, 제45조에 따르면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설계설명서, 도면 등에 따라 우수한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 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정상 공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감리용역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소에서는 ‘○○○○사업소 ☆☆☆시설 전력계통 이중화 구축사업(전기공사)’에 대하여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공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시행한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상에 월 *회 진행되고 있는 공정 현황을 월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 공사기간 ***일 중 **일이 지난 20**. **. **. 기준 누계 공정률이 *%로 예정공정 대비 실시공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감리원으로부터 월간

공정현황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지 않는 등 관계법규 및 감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공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 [주의]** ①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 관계법규를 숙지하여 감리원의 공사 설계도서 검토업무와 공사의 공정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외곽 ㄹㄹ시스템 교체공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사업소

내 용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는 정수장 내 외곽 ㄹㄹ시스템인 울타리 ※※※※※이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로 오·부작동이 발생되고 기설치된 제품이 단종되어 타사와 호환이 안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외곽 ㄹㄹ시스템 교체공사를 시행하였다.

1.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 제131조에 따르면 시공자는 공사 시공단계에서 공사감독자에게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접수하고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소에서는 공사의 설계서인 일반시방서에 도급자가 계약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재승인도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주요 자재인 ※※※※※, ▲▲▲▲▲, 네트워크 ■■■■장치 등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이 지난 20**. *. **. 자재승인도서를 제출하였으며 발주청의 자재 승인을 받기 전인 20**. *. *. 납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도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지 않는 등 관계법규 및 공사 일반시방서에서 규정한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준공검사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르면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승인·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소에서는 공사의 설계서인 특기시방서에 도급자가 시스템의 구체적인 종합 시운전 계획 및 시나리오에 관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종합 시운전 시험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자가 문서가 아닌 구두로 신청한 종합 시운전 계획에 대하여 발주청 역시 구두로 승인하는 등 관계법규 및 공사 특기시방서에서 규정한 준공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주의] ①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규를 숙지하여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업무와 준공검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개선요구

제 목 수도 관련 용역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그 광역시가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그 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영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이다.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부(이하 “○○부”라 한다)에서는 「수도법」 제4조에 따라 수도의 설치·관리에 대한 최상위 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포함)하고자 5년 마다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5년 마다 별도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20**년도에 ‘인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이하 “관망기술진단용역”이라 한다) 발주 및 20**년도에 ‘2035 인천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이라 한다)을 발주하였다.

그런데, 20**. *. **. 착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과 20**. *. *. 착수한 관망기술진단용역의 과업내용을 비교해 보면, ‘기초조사’ 및 ‘시설개량계획’ 분야는 과업내용이 중복되어 있고 이 외에도 부분적으로 일부 중복되는 항목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두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였을 경우 중복 반영된 항목의 직접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전체 사업예산의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2020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과 관망기술진단용역을 병행 시행할 수 있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 상태이다.

위 두 용역을 발주 당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개정된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에 따라 “병행 시행 시 기준·배제 항목”을 적용하여 통합 발주하였을 경우 246,460천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두 용역 간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수질, 누수 등의 항목들을 일부 조정(통합)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또한, 두 용역은 수립(시행)주기 동일(5년) 및 발주시기가 비슷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에 따라, 통합 발주하는 경우 기초조사부터 분석·결과, 계획수립까지 과업내용 간 피드백이 가능하고 상호 보완적·유기적인 과업수행을 통하여 효율적인 용역 수행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개선] 예산절감 및 과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관망기술진단 용역의 통합발주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상수도공사 관련 관자재 검토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①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③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⑥(삭제), ⑦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을 말한다.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르면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7호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이란 ①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것,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그 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이다.

시민들은 2019년 5월 인천 적수사태 이후 수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요구수준도 높아져 있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매년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 및 맑은 물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신설 관로공사를 통한 급수율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노후관 교체공사 업무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부(이하 “○○부”라 한다)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산하 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수도시설관리소는 구경 350밀리미터 이상 상수도관의 유지관리, 중부수도사업소·남동부수도사업소·북부수도사업소·서부수도사업소·강화수도사업소(이하 “5개 사업소”라 한다)에서는 구경 350밀리미터 미만 상수도관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부에서는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하여 매년 산하 사업소와 협의 및 『2035 인천 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인천수도기본계획”이라 한다) 시설개량계획에 따라 연간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소별 사업물량 배분 및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인천 적수사태 이후 20**년부터는 인천수도기본계획 시설개량계획보다는 자체기준을 정하여 노후관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산하 사업소에 사업물량 배분과 예산편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경 350밀리미터 미만 상수도관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5개 사업소에서는 매년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수도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변경 포함)하는 계획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인천광역시 수도분야의 가장 최상위 법정 계획이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계획임에도 2019년 5월 인천 적수사태로 인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부득이하게 노후관 교체계획을 인천수도기본계획과 일부 다르게 수립·시행하고 있다.

다만, 노후관 교체와 관련하여 ○○부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도 법정 계획에 따른 노후관 교체 사업량을 최대한 시행하도록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수도관의 자재별·가격별 적정한 검토 등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노후관을 신속하게 교체하여 유수율 제고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5개 사업소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한 3년간(2019.~2021.) 노후관 교체 실적은 인천수도기본계획 3개년(2019.~2021.) 사업물량 대비 59%에 불과함에도, 노후관 교체공사의 사용 관자재를 살펴보면 해안가나 매립지 등을 제외한 육지(내륙)에서도 주철관 대비 가격이 고가인 강관을 구매(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년도에 시행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예로 보면 3개 사업소에서는 노후관 **km를 교체하는데 *,***백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고, 이 중 고가인 강관을 사용하여 수도관자재비는 *,***천 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인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2019. 10.)』 ‘표 10.1-3 상수관 관종 선정비교’에 따르면 폴리에틸렌 강관 및 덕타일 주철관의 수명은 동일하게 약 50년으로 수록되어 있고, 급수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 △△ 연간 추진계획’ 방침서에 수록된 수도관의 경과년별 노후관 기준에 따르면 강관은 30년, 주철관(시멘트 라이닝)은 35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강관과 주철관의 사용년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수도기본계획에 수록된 인천광역시 지질계통도에 따르면 20** 3개 사업소에서 시행한 **건 사업지역은 바닷가나 매립지역이 아닌 육지(내륙)로서, 염류토에 해당하지 않는 토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서울시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덕타일 주철관을 구매할 경우에는 강관 대비 약 70%의 가격으로 자재를 구매⁶⁾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절감예산으로 추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덕타일 주철관의 경우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아 공사기간 중 적기에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서울시의 사례처럼 공사계획이 수립되면 소요되는 자재품목 등을 사전에 협의할 경우 원활한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금번 감사기간 중 덕타일 주철관을 생산하는 A사에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말 또는 사업년도 초에 해당공사에 필요한 직관 및 이형관에 대하여 개략수량 등을 사전협의 요청할 경우 공사기간 중 적기에 자재공급이 가능한지’ 정식 문의한 결과, A사에서는 ‘관자재 수급에 있어 비수기는 **월~*월, 성수기는 *월~**월이며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예산내역(소요품목)이 연초에 파악되면 사전에 생산 완료 및 적기 공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회신하였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지장물 등의 영향으로 계획하지 않은 제품이 필요한 경우 자재수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비수기의 경우 직관 **일, 이형관 **일(이형관 발주량이 **톤 이상일 경우 **일, ***톤 이상일 경우 **일), 성수기의 경우 직관 **일, 이형관 **일(이형관 발주량이 **톤 이상일 경우 **일, ***톤 이상일 경우 **일)이 필요하고, 누수사고 등 긴급품목은 *주이내(**EA 내외) 자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년~20**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후관 교체사업 관련 주철관을 적용한 **건 사업 중 사전에 소요품목을 협의한 건은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6) 주철관과 강관의 가격 차이는 구경에 따라 다르며, 20**년도에 실제 5개 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에 사용한 D=80mm~300mm 강관 및 주철관 단가를 적용하여 비교하였음

**건은 계약일 전·후로 소요품목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부에서 노후관 교체계획(일정, 예산 등)이 확정되면, 산하 사업소에서는 동 계획에 따른 설계도서를 미리 작성하여 사업년도 기준 전년도 말이나 사업년도 초에 노후관 교체공사에 반영된 자재에 대하여 사전 협의할 경우 자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 당해연도 공사의 경우에도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 착공 준비기간을 감안 사전에 소요품목을 협의할 경우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다.

한편, 전국 특·광역시 5년간 우수율 현황을 비교해 보면, 인천시는 우수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울산시의 경우 우수율이 하락하는 반면 서울시·부산시의 경우 우수율이 90% 초·중반을 유지, 대구시·광주시·대전시의 경우에는 꾸준히 우수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16.~2020. 특·광역시 우수율 현황

구분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2016년	89.9%	95.3%	92.7%	92.5%	86.2%	93.67%	90.1%
2017년	89.8%	95.8%	92.8%	93.1%	86.5%	93.67%	88.5%
2018년	89.9%	95.1%	93.4%	93.3%	87.5%	93.90%	86.7%
2019년	88.4%	95.8%	91.6%	93.4%	88.2%	94.96%	86.2%
2020년	88.1%	95.5%	92.7%	93.5%	90.85%	95.39%	87.4%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인천시의 경우 우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노후관 교체계획 수립 시 자체계획과 더불어 인천수도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량 계획 및 예산을 확보하고, 산하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시설은 신설과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분야로서 노후관 교체 사업 또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하면서도 많은 교체물량을 소화하여 우수율 향상에 기여함이 주된 목적인 바

수도관 자재 선정에 있어서 인천시의 토질상태를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염류토의 경우 염분 등이 강한 지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폴리에틸렌 강관 등을

선별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육지(내륙)지역에서는 서울시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교적 단가가 저렴한 덕타일 주철관 등을 사용하여 조속한 노후관 교체와 보다 많은 교체물량 소화(시행)로 우수율 제고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 [개선] ① 인천시 재정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신설관로 및 노후관로 교체와 관련하여 인천시의 토질상태를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육지(내륙)지역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주철관 등의 관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고,
- ② 또한 염류토의 경우에도 염분 등이 강한 지역에 한하여 폴리에틸렌 강관 등을 선별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하면서도 보다 많은 노후관 교체를 통하여 우수율 향상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매각 수입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지방회계법」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며, 세입의 징수는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세입의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 의무자에게 세입과목, 납입금액, 납부기간 및 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한다.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6조 및 제37조에 따르면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은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2조에 따르면 세입이란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은 해당연도에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년 ☆☆동 ***-**번지 공유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매각하면서 입금된 계약금액 수입금은 당해연도 징수결정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지난 20**년도에 잔금 입금과 함께 징수결정 하였을 뿐 만 아니라, 20**년 ~ 20**년 기간 동안 매각(회계간 유상이관)한 공유재산

*곳의 수입 대금에 대해서도 사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교부하여 매각대금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수납 처리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결재용 보통예금 계좌로 먼저 입금 받은 후 사후 징수결정 하고, 납입의무자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일 ~ **일을 지체하여 세입처리 하였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주의]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입금의 세입처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직원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공유재산 등기·등록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 ○ ○ ○ 부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란,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의 방법으로 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서도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권리확보된 내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년~20**년 기간 동안 신축한 건물 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 취득일(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20**년 준공한 ☆☆정수장 ★★★★★시설 건물 등 *개동은 취득일로부터 *개월~*년 *개월이 지난 후 등기·등록 하였으며,

□□정수장 △△△△△△△△시설 건물은 20**. *. **. 사용승인 이후로 감사일 현재까지 등기·등록을 하지 않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취득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공유재산에 등재도 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정] 공유재산으로 취득 후 기간 내 등기·등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하시기 바라며,

[주의] 향후, 직원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상수도요금 체납액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수도사업소 등 ●개 수도사업소

내 용

1. 상수도요금 체납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와 *개 수도사업소(이하 ‘상수도사업본부 등’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에 따라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으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말일로 하여 징수하며 납부고지는 납부마감일 10일 전까지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르면 제28조에 따라 고지된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10일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부과금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급수설비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서 독촉기일까지 체납액 또는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정수예고장과 고지서를 첨부하여 송달하고 예고기간이 경과하면 정수처분을 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수도전정수장을 수요가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 20**년 **월 납기 이전으로 체납액 **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정수처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수도사업소 등에서는 수용가 **개소에 대한 ***건 체납액 **,***천 원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에서는 수용가명 ☆☆☆(고객번호: 237-*****)과 ※※※※※※※※※(고객번호: 237-*****)의 정수처분에 대하여 수용가명 ☆☆☆의 수도전은 20**. *. *. 폐전하였고, 다음으로 수용가명 ※※※※※※※※※는 전체 건물 중 주계량기는 ㄹㄹㄹ로 설치되고 보조계량기는 상가부분(00개 영업점)으로 설치되고 있는 경우로 정수처분은 주계량기를 하게 되므로 급수가 중단되면 상가부분 영업점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주계량기와 보조계량기를 독립수전으로 변경(▽▽수도사업소-*****호(20**. *. **.))하고자 추진 중에 있고 한편, ※※※※※※※※※(***호)는 강제경매개시결정(20**. *. **, 20**타경*****)으로 경매 진행 중에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에서 제시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과 ※※※※※※※※※에 대한 정수처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도사업소 등 ●개 수도사업소에서는 수용가 **개소에 대한 ***건 체납액 00천 원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징수권(3년) 소멸에 따른 시효결손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1조에서 체납금과 연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의4에서 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되어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 독촉(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하는 경우 시효는 중단되고 납세고지, 독촉(납부최고)의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는 새로이 진행하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다.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독촉기간 이후 무재산 등으로 시효 중단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되어 시효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 독촉기간 경과 후 3년이 경과한 20**년 *월 납기 기준 체납액 수용가에 대하여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도사업소 등에서는 독촉기간 만료일 이후 또는 재산압류 해제일 이후 수도요금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용가 00개소에 대한 00건(체납액 0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정] ① 00만 원 이상 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수용가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제 사용자 확인, 납부독려와 함께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수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② 시효 경과된 체납액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재산압류, 회생채권, 법원경매 등)에 따른 시효 경과여부를 재검토하고, 검토결과 소멸시효(3년)가 경과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즉시 결손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 개선 요구

제 목 상수도 요금 등 과오납금(충당 및 환부) 처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수도사업소 외 ●개 수도사업소

내 용

상수도사업본부와 *개 수도사업소(이하 ‘상수도사업본부 등’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등의 충당 및 환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 처리 규정」 제28조제1항에서 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금내역서(별지 제46호 서식)에 의하여 과오납 결의를 하고 과오납금은 기타 영업외수익(잡수입) 과목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은 과오납금 정리부(별지 제47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29조제1항에서 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금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 처리 규정」 제30조제1항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고도 그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환부받을 자에게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요금등이 부과취소, 감액 또는 이중납부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으로 과오납금을 환부 받을 자에게 지급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 과오납금 환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수도사업소 등에서는 요금 등이 부과취소, 감액 또는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납금 환부(충당) 내역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과오납금 환부(충당)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주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과오납금 충당 및 환부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 하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상수도수용가정보시스템에 과오납금 충당 및 환부 통지(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과오납금 충당 및 환부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요구 · 권고

제 목 상수도 요금 등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수도사업소 외 ◎개 수도사업소

내 용

상수도사업본부와 *개 수도사업소⁷⁾(이하 ‘상수도사업본부 등’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의2에 따라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각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조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상수도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 하도록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의2제3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과다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1. 사용량이 평상시의 평균사용량 보다 월등하게 격증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상수도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0조 제1항에서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 상수도 요금의 이의신청 처리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7) 중부수도사업소, 남동부수도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강화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등 *개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건에 대하여 기한이 경과하여 통지함으로써 이의신청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 ▲▲▲▲입주자대표는 통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 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40조제2항에서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이를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에 등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세 기본법」 제23조, 제24조의 기간의 계산, 기한의 특례의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 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23-1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운영예규 법 23-2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1항 기한의 특례에서 공휴일, 토요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주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이의신청 통지 기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이의신청 통지 기한에 대하여 타 특·광역시의 관련 조례상 통지 기한을 참고하여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업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 주의(훈계) 요구

제 목 ☆☆☆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 ●●●부

내 용

상수도사업본부는 만성적 물 부족 도서지역의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근본적 용수확보 대책인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코자 “☆☆☆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용역 관리·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4장 제2절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한편, “☆☆☆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제3.3에 따르면 작업진행 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진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공정계획 및 실적, 향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할 때에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수행 중 방침을 결정하여야 할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 자료를 통하여 방침을 확정 후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검토과정이 과업기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요 공정 단계 별로 보고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 분담대표 A사는 착수일 기준으로 20**년 *월부터 용역 중지(20**.*.*) 전월인 20**년 *월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 매월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공정보고서로 월간 추진현황 및 계획, 과업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으며 과업 예정공정표에는 과업기간에 대하여 월별 공정계획 및 기시행 여부를 기재하여 공정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A사는 월별계획에 따라 20**년 *월부터 *월까지 □□□□□탐사를 기시행 하였으며 해당 공정률은 ⦿%라고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A사가 제출한 제1회 기성 검사(20**.*.**~20**.*.**.) 자료에는 □□ □□□탐사의 공정률이 ⦿%로 되어있어 그동안 제출한 공정보고서와 불일치하였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고 자료가 불일치할 때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불일치 사유 분석과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해야 함에도, 용역 공정보고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적정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수도사업본부는 용역수행 기간 동안 공정보고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과업내용의 일부가 미 실시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변경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정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 기간 종료 후에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기성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집행기준 제14장 제8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인 A사, B사, C사는 “☆☆☆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제*회 기성 검사(20**.*.**.~20**.*.**.)를 실시하고 기성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당 용역감독공무원은 20**년 *월 *일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용역에 대한 감독 및 제*회 기성부분(기성율 **.*%)의 기성검사를 마쳤다는 기성검사(감독)조서를 계약부서(♂♂부)에 제출하였다.

계약담당자는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회 기성부분 검사원 서류, 용역감독공무원의 기성검사(감독)조서 등 관련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탐사 공정을 100% 분담하는 D사의 기성률 현황이 ❶%임에도 기성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동 용역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는 혼합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였다.

집행기준 제7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한 기성금 신청서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집행기준에 따라 각 구성원별로 이행실적 및 신청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각자의 이행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총 기성 지급액을 공동수급체(*개사)의 도급비율별로 임의 판단하여 지급하였다.

3.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준공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집행기준 제14장 제6절 제1(과업 내용의 변경) “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 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 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14장 제6절 제1(과업 내용의 변경)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 금액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집행기준 제14장 제8절 “1”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 안에 준공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준공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 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상수도사업본부는 “☆☆☆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수행을 위하여 ☆☆☆도 지하수 양수시험에 대하여 검토보고(시설부-****, 20**.**.**.)하였다.

☆☆☆도 지하수 양수시험 수행계획서에 따르면 1차 단계에서 목표 완료 시 또는 용수량 확인 후 수량 및 수질 기준 미 충족시 이에 대하여 실정보고 하여 방침을 득한 후 2차 과업(□□□□□탐사)을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탐사 공정은 계약상대자 *개사 중 D사가 100% 도급분담 하는 과업으로, □□□□□탐사를 진행할 수 없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

다면 후속 과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이행 기간 내에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했어야 한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는 ☆☆☆도 지하수 양수시험 수행계획서에 따른 실정보고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적정한 변경계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없이 □□□□□탐사 과업을 미이행하고 준공기한일인 20**년 *월 **일에 “☆☆☆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용역감독공무원은 당초 설계내역 중 미 실시한 과업(□□□□□탐사)에 대하여 사유 및 정산(감액)을 보완하도록 20**년 *월 *일 보완지시하였다.

계약상대자는 20**년 *월 **일 보완 지시에 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재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미 실시한 과업(□□□□□탐사)으로는 당초 목적인 취수 가능량 조사가 어려워 발주처와 협의하여 미 실시한 과업(□□□□□탐사)을 본 과업수행 내용에서 제외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 요청한다는 검토 의견이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탐사로는 당초 목적인 취수 가능량 조사가 어렵다는 의견만 있을 뿐, □□□□□탐사 조사가 취수 가능량 조사에 효율성이 낮아 과업내용서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용역감독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검토 의견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용역감독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기간 이후에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를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동 용역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인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지연된 경우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내부검토 없이 준공검사 보고(●●부

-****, 20**.*.**.)에 정산내용을 포함하여 결재를 득하여 과업내용 변경을 부적정하게 승인하였다.

더욱이, 용역감독공무원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계약을 선행한 후 준공검사 완료 처리하여야 함에도, 변경계약에 대한 별도의 내부검토 없이 준공검사 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단일 문서(●●부-****, 20**.*.**.)로 결재를 득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변경계약을 체결(20**.*.**.)하기도 전에 과업내용의 일부가 미 완료된 과업에 대하여 준공검사에 합격 처리(20**.*.**.)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준공기한 이후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 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동 용역계약 건에 대하여 ㉠㉠파(◇◇◇파) 탐사 관련 타당성 검토보고서 미 제출, ☆☆☆도 지하수 양수시험 과업수행 실정보고 미 실시 등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에 과업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최종검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준공기한(20**.*.**.) 이후 시정조치 한 날(20**.*.**.)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20**.*.**.)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감액 00천 원)만 한 후 준공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아울러, 실제 지체일수가 10일 이상이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나, 지연배상금 부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연배상금을 미 부과함으로써 수의계약 참가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시정조치 후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최종 준공합격 처리된 “☆☆☆도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건에 대하여 최종 준공합격 처리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00천 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부과·징수결정 하시고,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지연배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 ●●●●사업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지나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삽입하여야 한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사대상 기간 중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건의 지연배상금을 부적정하게 부과 처리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사업소는 “■■■동 지하 창고 등 방수공사” 계약의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계를 제출한 계약상대자 A사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면서 준공기한 익일(20**.**.**.)부터 준공검사를 완료(20**.**.**.)한 날까지의 기간(*일)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하나, 준공기한 익일(20**.**.**.)부터 준공계를 제출(20**.**.**.)한 날까지만 지체일수(*일)에 산입하여 *일(**,***원) 과소 부과하였다.

다음, ○○○○부는 “○○, ○○ 지방상수도 공급시설공사” 계약의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계를 제출한 계약상대자 B사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면서 준공기한 익일(20**.**.**.)부터 준공검사를 완료(20**.**.**.)한 날까지의 기간(**일)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하나, 지연일수를 **일로 계상하여 *일(*,***,***원) 과소 부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는 “송수펌프 ●●● 보충 및 □□ 교체” 계약의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계를 제출한 계약상대자 C사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면서 준공기한 익일(20**.*.**.)부터 준공검사를 완료(20**.*.**.)한 날까지의 기간(*일)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하나, 준공기한 익일(20**.*.**.)부터 준공계를 제출(20**.*.**.)한 날까지만 지체일수(*일)에 산입하여 *일(*,***원) 과소 부과하였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과소부과한 지연배상금 00천 원을 조속히 부과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식수원개발사업 관급자재 구매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사업소

내 용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제5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5개 이상 공급업체의 제안서 심사)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업체 간 경쟁 도입으로 가격 및 품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이하 ‘MAS 2단계경쟁 기준’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 모두 포함)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MAS 2단계경쟁 기준’ 제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MAS 2단계경쟁 기준 제5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건과 이전 납품요구건의 예산비목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상이하거나 예산회계연도가 달라 한 번에 예산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예외사유 및 증빙자료(각목명세서 등)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해야 한다.

1. 국가기관, 교육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 예산체계상 ‘세목’ 이상의 과목이 상이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 예산체계상 ‘통계목’ 이상의 과목이 상이한 경우
3. 그 밖의 수요기관 : 제1호 및 제2호에 대응되는 과목이 상이하야 한 번에 예산지출이 어려운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는 20**년도 *월부터 20**년도 **월까지 식수 부족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도 및 ☼☼면 주민들의 식수 공급을 위하여 ●●●도 외 *개소의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급자재(㉠㉠㉠)를 조달 구매 하였다.

○○○○○사업소는 △△도, ▲▲면 식수원개발사업 관급자재 구입을 위하여 각각 동 일자(20**.*.**.)에 내부결재(○○○○○사업소-****, ****)를 득하였다.

동 내부결재 문서의 관급자재 목록을 확인한 결과 ㉠㉠㉠는 ●●●도 외 *개소에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이었으며, 지출방법으로 동일 예산회계연도의 동일 예산과목(자본적지출-비가동설비자산취득-건설중인자산-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이었다.

이러한 경우는 MAS 2단계경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급자재 구매 시 예산 통계목별로 합산하여 2단계 경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설치 위치가 상이하다는 사유로 관급자재 구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통합발주 하여 MAS 2단계경쟁을 통하여 납품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20**년 *월부터 **월까지 약 *개월 동안 총 *회(00천 원)에 걸쳐 시기를 나누어 관급자재 구매내역서에 반영된 특정 업체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일반 구매하였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량 납품요구 시 등록된 계약금액의 최소 1%부터 최대 2%의 추가할인율이 적용되며, 더욱이 2단계경쟁 시에는 MAS 2단계경쟁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 이하(다만,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 기준 계약가격이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음)로 제안하여야 한다.

이처럼 통합발주하여 2단계경쟁으로 구매시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사업소는 2단계경쟁을 회피하고 분할 구매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다수 업체의 참여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업소는 적정한 시기에 전체 물량에 대해 2단계경쟁을 통해 계약하더라도 사업일정에 맞추어 납품수량 및 일정을 조정하면 분할구매와 같은 효과가 있는 등 정당한 업무처리 방법이 있음에도, 시기적으로 촉박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통합발주를 외면하고 시기를 나누어 특정업체에 분할구매 한 행위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러한 적절치 못한 인식으로 인하여 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지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체결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중복되는 품목은 통합발주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담당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관경고·시정·주의(훈계) 요구

제 목 신기술·특허공법 및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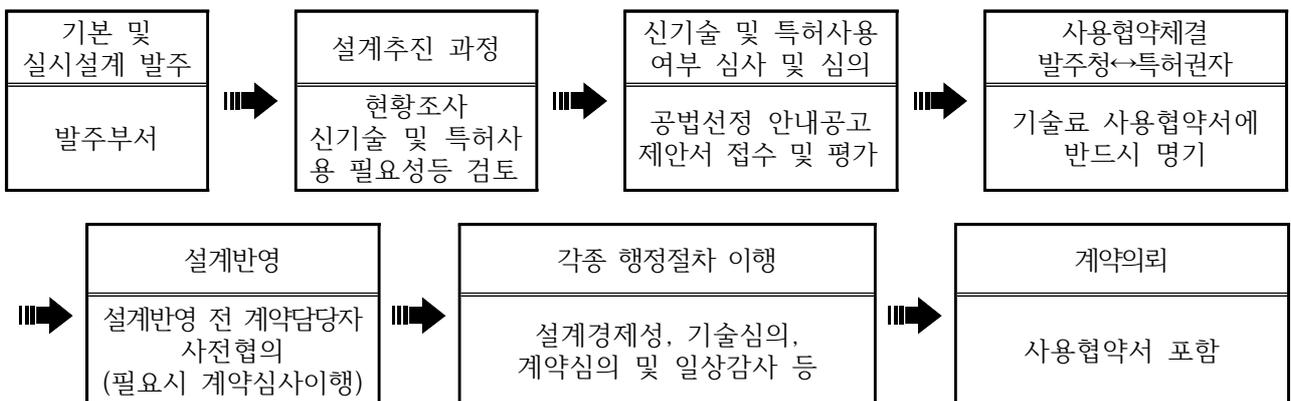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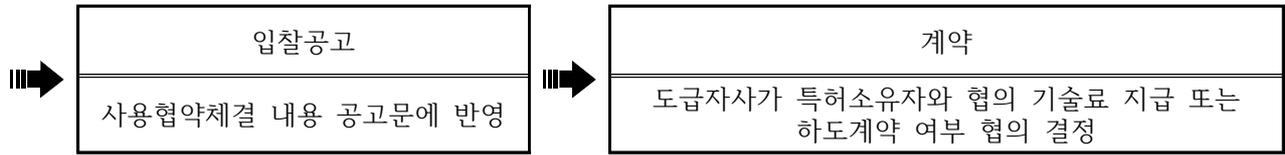
관 계 부 서 ○○부, ●●부, ㉠㉠㉠관리소,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 요령 제3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특허 통상실시권자 제외)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입찰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의 <참고>와 같다.

【참고】 신기술 및 특허적용 절차





1.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발주부서에서는 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국가 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로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여야 하고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3일 전까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해야 한다.(단,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부에서는 □□□□ □□공사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제안서 접수시 평가위원을 추천한 결과에 따른 위원 선정은 [표1]과 같고, 특정공법 선정위원회 결과보고(○○부-****, **.*.***)에 따르면 실제 특정공법제안서평가위원은 총 7명(전원 외부위원)으로 본부 기술자문위원[2명: G사 ggg, I사 iii], 시 건설심의위원[3명: H사 hhh, N사 ㄷㄷㄷ, D전문대학 ddd], 상하수도협회 추천위원[2명: L사 ll, 상하수도협회 ㄹㄹㄹㄹ]으로, 이 중 ㄷㄷㄷ과 ㄹㄹㄹㄹ은 선정위원 또는 예비위원 명부에 해당되지 않는다(상수도 기술자문위원 인력 POOL에 포함)

○○부에서는 선정된 위원 7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날로 특허공법선정위원회 개최일을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표1】 제안서평가 위원 선정(총14명, 선정위원 7명+예비위원 7명)

순위	고유번호	소속	성명	비고
1	인천-***	A사	aaa	선정위원
2	인천-***	B대학교	bbb	
3	인천-***	C연구원	ccc	
4	인천-***	D전문대학	ddd	
5	인천-***	E상수도사업본부	eee	
6	인천-***	F사	fff	
7	인천-***	G사	ggg	
8	인천-***	H사	hhh	예비위원
9	인천-***	I사	iii	
10	인천-***	J대학교	jjj	
11	인천-***	K대학교	kkk	
12	인천-***	L사	lll	
13	인천-***	M사	mmm	
14	인천-***	N사	nnn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지역가점 부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 기준(2021.4.1.시행)」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반영하는 신기술·특허공법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1.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당 공법의 신기술 등 적용 필요성 및 평가항목, 평가방법을 검토하여 결과에 반영, 2.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7일(긴급5일)이상 공법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 3.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법선정 안내공고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4.공법 평가 후 위원별 항목 평가점수 공개 등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질의답변(△△△△과-****, **.*.***)에 따르면 공법선정 평가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유사한 다수의 신기술·특허공법 중 해당 공사계약 발주 목적에 기여하는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제안된 신기술 등 공법 내용과 무관하게 지역 업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관리소에서는 □□□□□□ 외 *개소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될 ■■■■ 공법 선정을 위하여 신기술보유자 및 특허권자를 참가자격으로 제안공고(**.*.***)하였고 세부평가기준에 정량적평가 항목에 지역업체 배점(*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부에서는 공법선정위원회 및 자재선정위원회 운영 계획(●●부-****, **.*.***)을 수립하여 행안부 예규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기존의 기술자문위원회는 자재선정을 위한 자재선정 위원회로 변경 운영하였다.

결국 상수도사업본부 ○○○○○과 ○○○○○에서는 ●●부에서 수립한 자재 선정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특허가 포함된 자재 선정 공고 시 지역가점 *점을 부여하였다.

상수도사업본부 ●●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기준은 신기술, 특허 공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자재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규정이 없는 것을 감사관 개인의 판단으로 확대 해석하여 자재에 가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지역 내 생산 자재의 우선사용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점제도는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고 가점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우선 개정되거나 상위의 다른 법적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지방계약 관련 법규에는 지역가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을 함께 있어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경우도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절차를 준용하는 것을 볼 때 ●●부의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3. 협약 시 기술사용 요율 미명시 및 설계내역서에 기술사용료 미반영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발주부서는 공사 발주 전에 기술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하도급 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의뢰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허 사용협약 체결 시 기술사용료 등을 정하지 않아 공사추진 과정에서 기술보유자가 낙찰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등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기술사용료에 따른 비용을 부당하게 낙찰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 범위 내에서 기술사용료를 산정 후 원가계산 시 반영하고 공사 추진과정에서 기술보유자의 참여유형에 따라 해당 비용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착공 후 기술보유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술보유자의 하도급 계약 신고서가 접수 될 때에는 협약서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감액(기술보유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미지급)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의 기술 사용협약 시 기술사용요율을 명시하지 않거나 설계내역서에 기술사용료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착공 후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기술사용 협의 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고 낙찰자에게 기술보유자와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다.

4. 특허보유자의 시공 명시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그 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소에서는 ㉠㉠㉠㉠ 관세척공사의 설계설명서에 ‘공사 중 관세척과 관련된 부분은 특허공법 보유자가 지방서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다.

5. 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중 4)특허공법 공사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인 공사로서 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신기술 등의 적용 부분이 85.72%이상이고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 특허·신기술 공법 보유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 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재무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신기술이 포함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되 부득이 공법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 및 신기술 적용 부분이 해당 공사 추정가격대비 85.72% 인지 검토한 후 공법을 보유한 자가 공사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소의 ☆☆☆ ☆☆☆☆ 조정공사(20**년, 20**년) *건은 검토를 소홀히 하여 특허·신기술 공법이 전체 공정의 99.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특허·신기술 보유 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소의 ※※※※ 개선사업(※※공사) 1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특허 공법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고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요청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확인 결과 특허 및 신기술 적용 부분이 해당 공사 추정가격 대비 85.72%에 미달하여 수의계약 체결 대상이 아니었다.

그 결과 특허·신기술 공법을 선정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특허를 제공하였고 다수 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6. 기술사용협약 미체결 및 하도급 부적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 요령에 따르면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신기술 등을 공사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 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발주부서인 ●●부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이후 ◇◇(◆◆◆) 방수 공법에 대한 선정 심의(**.*.***)하여 특허공법을 선정하였으나 특허공법의 기술보유자인 ◀◀◀(□□건설 대표)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 시설공사 입찰공고 시에도 기술사용협약서와 기술사용 협약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 방수공법에 사용된 특허(등록번호제10-******)는 ☒☒☒☒☒ 시트를 이용한 ☒☒☒☒ 및 이의 시공 방법 관련 특허로 등록 의무자 ◀◀◀이며 ❖❖ 기업은 통상실시권자(**.*.***)등록)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특허의 전용실시권자와는 협약이 가능하나 통상실시권자는 기술보유자가 아니므로 협약체결이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 ❖❖❖❖❖❖❖ ❖❖시설 설치공사 도급자인 ○○○○○○○(주)는 구조물 방수공사를 ㉯㉮기업(주)와 하도급계약(**.*.***) 후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단에 제출(**.*.***)하였고 감리단에서는 ●●부에 하도급 계약(구조물방수) 통보서 검토결과(●●부-*****, **.*.***)를 제출하였다. ㉯㉮기업은 통상실시권자로 기술보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에도 하도급으로 참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기관경고]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업무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엄중 경고하오니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공법선정위원회 및 자재선정위원회 운영계획을 재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특허 등을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기준에 따라 선정하시고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료를 반드시 명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분할 수의계약 및 계약체결 전 공사 시행 부적정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사업소

내 용

1.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르면 계약체결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은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으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며, 제3항에 따르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경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추정가격을 2천만 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의 1인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나 ○○○○사업소에서는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소의 △△△ △△△△ △△ △△ △△△△ 검토보고(○○○○-****, ****.*.**.) 문서에 따르면 20**년 누수 및 개보수 공사(□□□□ 계약) 준공 후 20**년 공사 계약시까지 공백기간(약 *개월) 중 동절기 급수대책과 관련하여 동결, 개보수 등 민원 해결을 위한 긴급 공사에 대하여 대가 지급방법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른 수의계약 검토서에 따르면 공사 기간은 20**.*.*.*~20**.*.*.*이며 공사구역은 ▲▲▲구 관내 전 지역, 공사업체는 □□건설(주) 외 *개사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수도사업소의 동파 등은 매년 동절기에 반복되는 것으로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입찰(공고기간3일)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였다.

20**년 ▼▼▼지역 개보수공사 시행(○○○○사업소-****, 20**.*.**.) 문서의 수의계약요청서에 따르면 수의계약 사유를 20**년 ▼▼▼지역 연간계약 시공업체의 공백기 동안 동절기 관련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신속한 민원 해소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긴급 공사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나 공사비가 1인 수의계약 금액 이상이며 동파는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다.

2. 계약체결 전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따르면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고,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정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수도 연간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제4장 개보수 및 블록정비공사에 따르면 감독관은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와 시공지시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시공지시의 내용 등이 정확히 전달되어 공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서면 지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모사전송, 문자 등을 이용하여 시공 지시할 수 있고 수급자는 시공지시를 받은 즉시 내용을 검토한 후 2주일 이내에 착공 보고서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누수공사에 따르면 감독공무원은 누수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게 작업지시서를 발부하고 긴급 누수복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의 20**년 누수복구공사(*건)의 준공감독조서(20**년 *월 **일 작성) 상에는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실시현장을 감독한 결과 공사 전반에 걸쳐 기성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그 밖의 약정대로 어김없이 전 공사의 100%가 되어 준공을 인정한다고 되어있고 기성부분

검사 조서에 따르면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기한(20**.*.**), 준공일자(**.*.**), 준공검사일자(**.*.**))로 되어있다.

그러나 업체에서 제출한 작업지시서, 작업완료보고서 및 준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공사 착수일시와 완료 일시는 20**년 **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0**년 개보수공사 준공 사진에 따르면 공사일자는 20**.*.*.~20**.*.*.까지로 되어있으나 업체에서 제출한 착공보고서(**.*월), 준공계에는 계약일자(**.*.**), 착공년월일(**.*.**), 준공기한(**.*.**), 준공년월일(**.*.**))로 되어 있고 감독관이 작성한 준공검사(감독)조서의 착공년월일, 준공기한, 준공년월일도 위와 동일하며 감독관이 작성한 시공지시서상에는 20**.*.*.에 시공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년 ▼▼▼지역 개보수공사(동절기 민원 **개소)의 준공검사 조서에 따르면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기한(**.*.**), 준공일자(**.*.**))로 되어 있으며 시공지시에 따르면 시공지시 날짜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되어 있다.

계약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계약 절차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사업소에서는 계약 체결되기 이전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로 분할하여 여러 업체에 공사 시공 지시하였고 실제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 요청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 [주의] ①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계약 체결 이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과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상수도사업본부와 산하사업소 계약 범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1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인천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의 회계공무원은 아래와 같다.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연구소 및 관리소 포함)	
상수도사업기업출납원	경영관리부장	기업출납원	사업소장
수입금출납원	수입업무 담당사무관	수입금출납원	수입업무 담당사무관
지출원	지출업무 담당사무관	지출원	지출업무 담당사무관
자산출납원	자산업무 담당사무관	자산출납원	자산업무 담당사무관
일상경비출납원	각부 주무업무 담당사무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주사 또는 지출업무 담당주무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주사 또는 지출업무 담당주무자	일반경비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사무관
분임자산출납원	각부 주무업무담당 사무관		

또한 제3조에 따르면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6억원 이하의 공사 및 토지매입, 2억 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구입,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구분	본부	사업소
공사, 토지매입	6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용역,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구입, 기타물건의 매입	2억원 이하	2,000만원 이하

4.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1,000만원(사업소 및 자치구의 경우 200만 원 이하)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계약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사무 통합 추진계획(●●부-****, 20**.*.**)을 수립하여 지역사업소 일정금액(공사·용역·물품 2천만 원) 이상 계약 사무를 본부에서 통합 발주하기로 하고 본부에 계약담당 전담팀을 신설하였다.(단, 조달청 계약 대상 및 수의계약은 사업소 자체에서 계약 처리한다.)

이후 계약사무 통합운영시스템 변경계획(●●부-****, 20**.*.**)에 따라 변경계약도 지역사업소에서 체결하게 되었으며 본부와 지역사업소 간 역할분담은 [표]와 같다.

【표】 본부와 지역사업소의 역할분담 내역

구분	역할 분담
본부	계약의뢰 사업 입찰진행/ 적격심사 계약체결 후 당해 계약서 의뢰기관(사업소) 이관
지역사업소	계약의뢰, 변경계약 착공(착수), 감독, 검사 등 계약 이행 선금, 기성금, 준공, 완료금 등 개가지급, 사후관리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현재 상수도사업 계약 업무 중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공사·용역·물품은 본부에 계약 의뢰해야 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지역사업소에서 계약하고 있다.

단,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계약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 조달의뢰 계약 등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 조달의뢰계약 등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각 지역사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자의 직무위임 범위를 위반한 권한 없는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회계 관련 직무 범위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현 규정에 일치되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등에 대한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정] 수도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 및 직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전결처리 사항 미정리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10조 시 산하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전결처리토록 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신설사무 등을 반영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 부서 변경, 신설사무 추가 및 부서·팀간 업무 이동, 전결권 재정비(6급 이하 출장 전결자 하향 조정) 등 총 ***건의 사무에 대해 전결처리사항을 개정(○○○○부-****, **.**.**.*)하였다.

그 이후 상수도사업본부는 20**년 *월과 20**년 *월에 정원 조정하여 부서

간 업무이관 및 업무 신설, 팀 신설 등을 하였고 20**년 *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담 조직을 구축하였으나 사무전결처리 사항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전결 미반영 현황은 [표]와 같다.

【표】 정원 조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전결 미반영 사항

구분	정원 조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전결 미반영 사항	비고
자체 정원 조정 (**.*.**)	○ 신규 법정 사무 - 지하시설물 현황 및 관련 자료 분석, 현장조사, 평가등급 산정 등 신규 사무 발생	부서·팀의 변경 없는 업무의 인원 증감은 제외하고 작성
정원자체조정 (**.*)	○ 부서 간 업무이관 - 감사업무 및 교육업무 이관(㉠㉠㉠부→○○○○부) - 취정수시설 유지관리 및 정수장 기술진단 등 - 정수장 관련 업무 이관(●●부→㉠㉠㉠부) ○ 법제업무 신설 ○ 검단신도시 가압장 운영(신설)	
정원조정 (**.*.**)	○ 원인자부담금 부과·소송 관련 전담팀 신설 ○ 법령개정에 따른 관세적 및 관망관리 ○ ●●부(●○팀+□□□□□□팀 통·폐합) ○ 수운영 통합감시시스템 운영(□□□□□□사업소) ○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신규 준공에 따른 관리 (△△△△△△사업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담 조직 구축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전담 조직 구축에 따른 팀 명칭 변경 및 팀 간 사무 조정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충무계획 업무는 □□부에서 ○○○○부로 변경되었으나 사무전결처리 사항 미변경, 20**년 *월 검침 업무를 민간위탁에서 공무직화하여 검침업무 민간위탁 수행지침 수립, 검침 민간위탁사 지도·감독, 검침 민간위탁 관련 사무 등 민간위탁 관련 사무는 없어졌으나 사무 전결처리 사항에 반영되지 않았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원 조정·조직개편으로 업무 신설·변경 등이 있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전결처리 사항을 개정하지 않는 등 내부 규정 정비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정] 사무 전결처리 사항을 현행화하여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정원 조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전결처리 사항 개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권 고

제 목 수도사업소 ○○○○팀·●●●●팀 사무분장 이원화 재검토 필요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 □□부, 산하기관(각 수도사업소)

내 용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인천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 본청의 실장, 국장, 본부장, 과장, 담당관의 직급 및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급과 부,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를 두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수도사업소, 수도시설관리소, 정수사업소, 맑은물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수도사업소의 관할구역은 [표1]과 같다.

【표1】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 관할구역

명 칭	관할구역
중부수도사업소	중구, 동구, 미추홀구 일원
남동부수도사업소	연수구, 남동구, 용진군 일원
북부수도사업소	부평구, 계양구 일원
서부수도사업소	서구 일원
강화수도사업소	강화군 일원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10조 시 산하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기관인 △△수도사업소는 긴급누수복구, 개보수, 노후관 교체공사, 급배수관, 급수공사, 블록정비, 생활민원 등의 업무를 지역으로 구분하여 ○○○팀은 ▲·▲구 지역, ●●●팀은 △△△구 지역으로 분리하여 지역전담제 형태로 업무를 수행, ☆☆☆·❁❁·❁❁수도사업소의 ○○○○팀은 급수공사, 저수조관리, 신설·증설·이설 계획수립 및 시행, 급수협의를, 불출수 등 민원처리 업무, ●●●팀은 노후관정비,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가압장 및 수압계관리, 누수탐사 및 수리 등 민원처리 등 업무분담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팀과 ●●●팀의 사무분장은 이원화되어 있다.

○○○○팀과 ●●●팀의 사무분장이 이원화된 경위는 □□부에서는 지역 사업소 사무분장 변경 계획을 수립[□□부-****, 20**. **. **]하여 지역사업소 통·폐합에 따른 □□팀(현 ○○○○팀)과 ●●●팀 사무 분장에 대하여 팀별 지역전담으로 변경을 검토하였다.

□□팀은 급수공사, 저수조관리, 신설·증설·이설 계획수립 및 시행, 급수협의를, 불출수 등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팀은 노후관정비, 블록시스템 유지 관리,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가압장 및 수압계관리, 누수탐사 및 수리 등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사무분장-□□□□팀, 20**. *. *.]하였으나,

사업소 통·폐합(**.**)**에 따라 업무지역 확대 및 업무량은 증가했지만 인력 감소, 팀 간 상호 소통 부족으로 업무 전가에 따른 민원불편 발생, 설계·시공·감독 등의 기술인력 부족 발생의 문제점으로 인해 팀별 지역전담제 시행(1안)과 2개 팀을 1개 팀으로 통합하여 전체 업무 시행(2안)에 대해 회의하였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인력충원을 전제로 한 지역 전담제 찬성, 타사업소(☆☆☆·❄·❄·❄) 지역전담제를 반대하였다.

그 결과 △△수도사업소의 □□팀(現 ○○○○팀)은 ▲·▲구 지역, ●●●팀은 ▲▲▲구 지역을 분리하여 사무분장 후 지역전담제 시범운영(20**년, 1년간) 지역전담제 시범 추진에 대한 장·단점 및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 계획(■■■■부-*****, 20**. *. *)에 포함된 수도사업소의 사무분장 가이드라인은 [표2]와 같으며 상수도사업본부 ■■■■팀에서는 상수도 조직개편계획의 분장 사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도사업소는 자체 사무분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단, △△수도사업소는 지역전담제 운영, ☆☆☆수도사업소는 옹진관리팀 운영)

【표2】 상수도 조직개편계획의 분장사무(시행 **.)**)**

구 분	주요 분장사무	비고
□□팀 (現 ☆☆☆☆팀)	· 기획 및 복무 · 예산 및 결산 전반 · 자재관리 및 수급·출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상수도에 관한 사항	명칭 변경
☒☒팀	·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체납관리, 정수처분 등	변동 없음
○○○○팀 (現 □□팀)	· 급·배수관(구경 350mm 미만) 신·증설공사 · 개보수공사 · 「건축법」에 따른 급수협약에 관한 사항 · 수도미터 관련 업무 · 비상급수대책 업무 등	명칭 변경

<p style="text-align: center;">●●●팀 (現 ■■■■■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수율 향상 계획 수립 및 시행 · 블록시스템 정비 및 유지관리(GIS 포함) · 상수도관(구경 350mm 미만) 누수탐사 및 수리 등 유지관리 · 노후관 교체공사 · 상수도 가압펌프장, 수압계 유지관리 · 관세척 등 	명칭 변경
<p style="text-align: center;">■■■■■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꼭지 모니터링 지점 수질검사 · 배급수계통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운영 · 옥내급수시설 상태검사 및 수질관리 (일명 워터코디, 워터닥터 포함) · 통수전 수질검사 · 일반 수질민원 업무처리 · 수질계측기 관련 업무 · 미추홀참물 품질인증제 운영(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검사) · 「수도법」에 따른 규모이상 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후 △△수도사업소에서는 일원화된 블록정비 추진을 위하여 사무 분장을 추가 변경 시행(20**.*.*)하여 지역전담업무와 통합업무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 산하기관인 수도사업소별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도사업소의 자체 사무분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지속적으로 ○○○○팀과 ●●●팀의 업무가 이원화 된 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원화에 따른 민원혼란,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 부족,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두 팀의 업무분장을 포함한 조직운영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절하게 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팀과 ●●●팀의 업무 처리 방식의 장단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조직·인력 운영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권고]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 ○○○○팀과 ●●●팀의 사무 이원화 등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팀), □□□□부(■ ■ ■ ■ 팀), △△부(▲▲▲▲▲▲팀)

내 용

1.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평가항목 배점 부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항에 따르면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지방계약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 절차 4. 제안서의 평가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별표1>과 같이 정하고,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따른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을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한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2016. 11.)'에 수록되어 있는 질의회신 사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지역업체 항목의 배점 부여 여부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는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 평가와 실질적으로 관계없는 평가항목을 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항목의 배점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⁸⁾하였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취지로 보았을 때 제안서 평가항목으로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배점 부여는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라 한다) △△부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9. 3월 이후) 중 *건의 ■■■■ ■■■■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으로 지역업체 참여 배점(3점)을 부여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특히 20**년 ■■■■ ■■■■ 용역 및 20**년 ■■■■ ■■■■ 사업(*건)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의뢰한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조달청의 구매업무 협의사항으로 지역업체 참여 평가항목 배정이 부적절함에 따른 해당 평가항목 삭제 의견이 있었고, ◎◎부(現 ○○○○부, 이하 같다)에서도 계약 의뢰 보완 요청 사항으로 정량적 평가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시 3점의 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부에서는 과업특성상 관내에 상주하면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는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조달청의 검토 의견을 미반영하였고, ◎◎부의 보완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을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는 것과 지역 내 여러 곳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특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사유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반영하였음을 회신함으로써 제안서 평가항목으로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8)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2016.11.3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발행) p.128 발췌

배점(3점)을 보완 없이 그대로 부여하였다.

그러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된 *건의 ■■■■ ■■
■■ 사업 모두 제안서 평가항목에 지역업체 참여 배점(3점)을 부여하였음에도
제안서평가 결과 타지역업체가 낙찰자(공동계약의 경우 주계약자)로 선정됨으로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제안서 평가항목에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부여한 것에
대한 실효성이 결여된 결과가 나타났고, 낙찰자로 선정된 타지역 업체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여 완료함으로써 지역 내 상주하며 측량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
성도 결여된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취지에 반하면서 그
실효성과 타당성도 결여된 부적정한 제안서 평가 항목을 구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제안서 미제출자에 대한 유효 입찰 성립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정하고, 지방계약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3. 제안서의 제출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에서는 20**년 ‘ⓂⓂ 및 ⓂⓂⓂⓂⓂ 통합유지관리용역(장기계속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공고하며, 6. 제안 공모일정,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하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을 실시하였고, 입찰서 제출 마감 결과 2개 업체(◇◇◇◇◇주식
회사, 주식회사 ◆◆◆◆◆)가 투찰하였으나 제안서는 1개 업체(주식회사 ◆◆◆
◆◆◆)만 제출하였음에도 제안서를 제출한 1개 업체(주식회사 ◆◆◆◆◆)를
대상으로한 제안서 평가를 □□□□부에 의뢰하였다.

이후 □□□□부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진행한 후 결과를
○○○○부로 통보하였고, ○○○○부에서는 해당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
□부에 기술협상을 요청하였으며, □□□□에서는 기술협상 후 결과를 다시 ○○

○○부로 통보하였고, ○○○○부에서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시담)을 진행한 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가격에 대한 입찰 결과 2개의 업체가 투찰하였으나, 이후 제안서는 1개 업체만 제출함으로써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유효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부에서는 입찰 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개찰조서에 명시하여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도록 함으로써 입찰 미성립으로 인한 재공고 실시 등의 기회를 박탈하였고, 입찰 공고문의 내용과 다르게 입찰을 진행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미흡

지방계약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 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 계약담당자는 감사대상기간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한 계약에 있어서 해당 사업 소관 부서에서 직접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건에 대하여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에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에 미흡하였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주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제안서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시기
바라며,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 결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 공개에 철저를 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공정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기관경고·개선 요구

제 목 통합 자재관리 추진 소홀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팀), △△△△△△소(▲▲팀)

내 용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라 한다) △△△△△△소에서는 상수도 자재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와 장기 미사용 자재의 감축으로 예산 절감 및 경영관리 개선을 목적으로 20**. *월 ‘상수도 통합 자재관리 기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장·단기 중점 추진과제를 정하였다.

1. 통합 자재관리 부서 지정 소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 *월 수질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변화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으로 상수도 혁신을 가속화 하기 위한 방향으로 ‘20** 상수도 분야 조직 개편(안)’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실(이하 “☆☆☆☆☆실”이라 한다)에 제출하였고, ☆☆☆☆☆실에서는 20*년 하반기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20**. *. **, 시행되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재관리와 관련하여서는 20**. *. **, 개정 시행된 조례 시행규칙 제4장 사업소 제1절 상수도사업본부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수도사업소장의 분장사무로 15. 자재관리 및 수급·출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소장의 분장사무에도 16. 자재관리 및 수급·출납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나,

20**. *. **,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20**. *. *. 개정, 시행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46조제2항의 수도사업소장의 분장사무에는 13. 자재관리 및 수급·출납에 관한 사항이, 제3항 수도시설관리소장의 분장사무로는 13. 자재관리시스템 개발·유지 등에 관한 사항과 14. 통합자재 관리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 ★★부(現 ○○○○부, 이하 같다) ●●●●팀에서 20**.*월 수립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소 대형관로 정비기능 강화를 위한 팀 신설을 내용으로 ○○○○팀은 폐지하며 ○○○○팀의 주요 사무(자재관리 운영계획 수립·추진)는 ▲▲팀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분장하였고, 조직 및 정원도 ○○○○팀 팀장에 해당하는 시설 5급 1명만 감원하고 나머지 정원은 모두 ▲▲팀 정원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자재관리 운영 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실무 인력의 정원 변동은 없었다.

그러나 이후 ☆☆☆☆☆실의 20**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시 첨부된 일부개정규칙안에는 기존 △△△△△소의 자재관리시스템 개발·유지 등에 관한 사항과 통합자재 관리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은 20**.*월 제출한 조직개편(안)의 내용과는 다른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의견수렴 시 ★★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결국 △△△△△소의 분장사무에서 자재관리시스템 개발·유지 등에 관한 사항 및 통합자재 관리업무는 삭제됨으로써 조례 시행규칙에 있어서의 상수도 통합 자재관리 기본 계획 추진 소관 조직이 불분명해지는 결과를 불러왔다.

2. 통합 자재관리 업무 추진 소홀

상수도사업본부 △△△△△소에서는 20**.*월 수립한 ‘상수도 통합 자재관리 기본 추진 계획’에 따른 장·단기 과제 추진을 위해 감사대상기간(2019. 3월 이후, 이하 같다) 중 ‘20**년 상수도 자재관리시스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소별 상시보유량 산정 및 분기별 자재관리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수행하였고, 상수도 통합 자재관리시스템 관련 비교견학 실시, 상수도 공사 자재 관리 계획 수립, 자재

표준화를 위한 코드 부여, 20**년 상수도 자재관리 운영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으나, 20**. *월 예산 미반영 및 조직개편(○○○○팀 폐지)을 사유로 ‘상수도 통합 자재관리 추진 계획 중단 보고’ 내부결재 후 ‘20**년 자재관리 운영 실태 지도·점검 결과보고(*사분기) 통보’ 이후부터는 신규 자재에 대한 코드 부여를 제외한 통합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20**. *. **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소의 자재관리와 관련한 변동사항은 ‘1. 통합 자재관리 부서 지정 소홀’의 내용과 같이 기존 ○○○○팀 폐지에 따른 ○○○○팀 업무를 ▲▲팀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업무 수행을 위한 정원도 ○○○○팀 팀장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 1명의 감원에 불과하였으며, 팀원에 해당하는 나머지 정원은 모두 ▲▲팀 정원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자재관리 운영 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실무 인력의 정원 변동은 없었음에 따라 기존 ○○○○팀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팀에서 계속 수행하여야 했다.

그리고 인사발령과 사업소 내부 사무분장에 따라 ▲▲팀에서 통합 자재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이전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통합자재 관리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던 ○●직렬 담당자의 보직은 유지되고 있었던 만큼 조직개편 이후에도 해당 사항은 추진되었어야 하며, 자재창고 구축 등의 업무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었다면 ★★부 등 관련 부서에 해당 사무를 다시 분장할 것을 요청하는 등 통합자재 관리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소에서는 20**. *. **.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팀 폐지 등을 사유로 ‘상수도 통합 자재관리 추진 계획 중단’을 결정하였고, 이후 장기과제인 통합 자재관리시스템 추진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신규 자재에 대한 코드 부여를 제외한 자재관리 운영실태 지도·점검 등의 단기과제 추진사항도 중단하여, 효율적 자재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었던 통합 자재관리의 추진을 소홀히 하였다.

다만 장기과제인 통합 자재창고 및 자재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20**. *월 ○○○○부 ●●●●팀에서 ‘통합 자재관리 운영계획 구축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을 재개하였으나, 해당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사업소별 개별 관리 자재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는 미흡한 상태임에 따라 해당 계획의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 자재관리 업무 추진 부서의 지정과 자재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사와 점검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한 상태이다.

3. 통합 자재관리 추진 소홀 인정에 관한 사항

감사기간 중 통합 자재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부 ●●●●팀과 △△△△△△소에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부 ●●●●팀에서는 20**. *월 조직개편(안)에 △△△△△△소 ◎◎◎◎팀 폐지에 따른 자재관리 업무와 정원의 관리팀 이관 내용이 있었음을 이유로 통합 자재관리 부서 지정에는 소홀함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20**. *. **일자 조례 시행규칙안 개정과 관련하여 기존 △△△△△△△소의 통합 자재관리 관련 항목의 삭제에 대한 개정 자료(초안 등)의 제출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미제출 등으로 △△△△△△소장의 사무에 통합 자재관리 업무 관련 사항이 분장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 따라 그 주장의 타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소는 20**. *. **일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이후 △△△△△△△소장의 분장사무에 통합 자재관리 업무 관련 사항이 삭제되어 통합 자재관리 관련 업무를 추진할 의무가 없던 사항으로 업무 추진이 소홀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거부하였으나,

20**. *월 조직개편(안)의 ◎◎◎◎팀 폐지에 따른 사무와 정원의 ▲▲팀 이관 사항은 이미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었음에도 조례 시행규칙안 개정 관련 의견수렴 시 통합 자재관리 관련 항목의 삭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과, 조례 시행규칙에 기존 △△△△△△소장 분장 사무가 삭제되었음을 이유로 수행하던 사무를 중단하는 사항을 △△△△△△소 내부결재로만 결정하며 기존 추진하던

통합 자재관리에 대한 추후 관리사항을 본부 및 수도사업소 등 관련 조직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리하지 않았던 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통합 자재관리 사무 수행의 근거가 없어 추진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통합 자재관리 사무와 관련한 신규 자재에 대한 코드부여 사항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점을 보았을 때, 20**. *. **일자 조직개편 시 해당 업무 및 인력은 ▲▲팀으로 이관되었고 인사발령에서도 통합 자재관리 업무 추진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던 ○○ 직렬 담당자는 ▲▲팀에 남아있었음에도 통합 자재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중단을 결정한 것은 명백히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것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을 만한 타당한 이유는 없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기관경고] 상수도 자재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로 예산 절감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합 자재관리 업무 추진이 소홀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 회피만을 하여 엄중 경고하오니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내부 조직의 역할에 맞는 정확한 사무 분장 및 분장된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 등 통합 자재관리 업무의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중수도 관련 요금 감면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팀), 인천광역시 ○○○과

내 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되,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재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서 조례 제4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 시설)에 계측장치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용량에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한 나머지 사용량을 요금으로 부과하며, 조정량은 상수도 사용량으로 하고, 이 경우 공제량은 상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별표 4의 감면기준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2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 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되, 물이용부담금과 수도요금을 구분하여야 하고,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 방법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고 정하고, 제6항에 따르면 제1항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에 위탁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였다.

1.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면 사항 개정 필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라 한다)에서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에 계측장치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사용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한(공제량) 나머지 사용량을 상수도사용량(조정량)으로 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산정 기준인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도 공제량 만큼 감면되고 있고,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하수도 사용료의 20%도 감면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되고 있다.

그러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 시설, 중수도 설치 시설,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는 사항으로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 중 하나를 경감하는 것임에 따라,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으로 인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중수도 설치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과도한 감면이며,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중 하나만 감면하는 것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타 시·도 중수도 시설 설치에 대한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 감면 관련 규정 사항 등을 참고한 요금 감면의 필요성 및 적법성,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개정도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부 ●●●●팀(이하 “●●●●팀”이라 한다)에서는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에 대한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의 제정 배경으로 「조세감면규제법」(現 「조세특례제한법」)과 「수도법」에 따른 중수도 및 절수 설비(「수도법」 개정으로 ‘절수설비’) 관련 사항, 「공업용수공급규칙」(2009. 11. 27. 폐지, 시행) 상 공업용수도사업자의 중수도 시설 설치·관리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사항을 인용하며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에 대한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각각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인용하는 것은 중복 감면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팀에서 인용한 규정은 중수도 등 절수 설비 설치에 대한 세제 지원 및 투자비에 대한 지원 사항과 중수도 설치·관리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사항으로, 중수도 설치 관련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모두를 감면하는 것이 과도한(중복) 감면에 해당한다는 내용과는 연관성이 없는 사항이며,

수자원 보존 여건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경제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중수도 설치의 확대가 필요하며 지원책의 축소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사항이라는 의견도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다면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중 하나만을 감면하는 것으로의 조례 개정은 그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2. 중수도 사용료에 따른 감면 적용 필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와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한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면 사항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는 사항과 관련한 물의 재이용률에 대한 최소 기준이 없이 중수도를 설치 및 사용 시에는 감면이 가능한 규정이다.

감사대상기간(2019. 3월 이후) 중 중수도 사용에 따른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면 사항을 확인한 결과 *개 대상, ***건은 중수도 사용량이 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가 감면되었다.

따라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를 통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한 경우에만 수도요금 등을 감면함으로써 물 재이용과 관련한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팀에서는 20**.*.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기존 상수도사용량을 한도로 중수도사용량을 감면하던 사항이 상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면할 수 없도록 개정된 사항과, 중수도 사용량 10퍼센트 미만 시설에 대한 감면 현황은 월 단위로 나뉘었을 때 해당 월에 일부 사용이 저조한 반면 전체 사용량 비율을 산정하면 최고 89.4%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월별 계측일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0퍼센트 미만 감면 배제는 요금부과의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물이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

하도록 한 사항이며, 제23조제2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은 중수도 설치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재량 사항으로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중수도 시설을 이용한 물 재이용률의 최소 기준을 법정 기준에 맞춰 정함으로써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한 물 재이용률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며, 계측하는 시점에서의 차이와 전체 사용량 비율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동안의 전체 사용량 비율이 89.4%에 이른 감면 대상이 있는 반면 일부는 전체 기간 중 단 한 건도 10퍼센트 이상에 이르지 못한 대상자도 있는 만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시설을 통한 물재이용률의 기준치를 조례로 정하고 그 이상을 재이용한 경우의 고지월에만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이 요금 부과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사항이라 볼 수 없다.

3. 요금 감면을 위한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 확인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서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계측장치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용량에서 중수도 사용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한 나머지 사용량을 요금으로 부과하며, 조정량은 상수도 사용량으로 하고, 이 경우 공제량은 상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요금 감면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항에서는 제32조의3에 따라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중수도운영자”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수질 유지를 위하여 분기마다 공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관할 사업소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소장은 중수도

운영자가 제출한 수질검사결과의 수질기준이 적합한 경우에만 요금 감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가. 요금의 감면 범위 관련 개정 검토 필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요금감면 범위는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서 상수도 사용량에서 중수도 사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되 상수도사용량의 100을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수도사용량을 공제하고 나머지 사용량을 요금으로 부과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에서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를 벗어난 중수도 설치에 따른 감면의 조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따라 감면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 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중수도 설치 결과의 통보는 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과, 제6항에 따라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 등 중수도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의 통보 등은 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점과, 타시·도 관련 조례 등의 규정에서 수질검사 결과의 확인 등을 중수도 설치와 관련한 요금 감면 범위에 대한 추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 적용 기간 등 세부 처리기준 마련 필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수도 설치에 대한 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중수도 운영자가 분기마다 제출한 수질검사 결과의 확인 및 수질기준이 적합한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의 적용을 받는 요금 감면 기간에 대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출된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한 월에 고지하는 요금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는 것인지, 수질검사 결과를 받은 월이 속하는 분기 3개월분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이 경우 제출된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 한 경우 이미 감면된 월의 요금에 대한 조치사항도 규정 필요)하는 것인지, 수질검사를 받은 월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에 해당하는 3개월분의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 분명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요금 감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팀에서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소장은 수질기준이 적합한 경우에만 요금 감면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사후감면) 현 시행규칙에 의하면 수질검사서가 제출되면 수질기준을 확인 하여 다음 분기 검사서 제출시점까지 감면해야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질검사기준 등 상위 법률개정 없이 단지 요금감면을 위한 수질검사 결과 적용기간 설정은 중수도제도 전체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중수도 운영자가 분기마다 제출하는 수질검사 결과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수질 유지를 위하여 수질검사를 받는 사항을 전제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분기의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감면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분기로 보여지며, 이를 ●●●●팀의 의견에 따라 다음 분기 검사 결과 제출시점까지의 감면으로 적용하는 경우 이전 분기의 수질검사 결과는 적합하여 해당 분기에 요금이 감면되고 있는 중에 해당 분기의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실제 요금이 감면되고 있는 기간의 수질검사결과는 부적합 함에도 감면이 되는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수질 유지를 위하는 사항과 요금 감면이 서로 배치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명확한 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개선] ① 중수도 설치에 대한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과 하수도사용료가 모두 감면되고 있는 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인천광역시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필요 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시어 중수도 설치와 관련한 요금 감면이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 사용량의 10 퍼센트 이상을 재이용 하는 경우의 고지월에만 중수도 설치에 따른 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어 중수도를 통한 물재이용률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③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이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감면범위에 대한 위임사항으로 적합한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필요시 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적합한 경우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의 적합사항이 적용되는 요금 감면 고지월에 대한 사항 등 일관성 있는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하수과장은

[개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필요시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을 개정하시어 중수도 설치와 관련한 요금 감면이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징계·주의(훈계) 요구 및 통보

제 목 중수도 요금 감면 처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부평구 ●●●●과

내 용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라고 한다)에서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시설에 계측장치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용량에서 중수도 사용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상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한 나머지 사용량을 상수도사용량으로 하여 요금으로 부과하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별표 4의 감면기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20%도 감면하여 부과하고 있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도 10% 감면하여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수질 유지를 위하여 분기마다 공인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관할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소장은 중수도운영자가 제출한 수질검사결과의 수질 기준이 적합한 경우에만 요금 감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수도 설치·운영과 관련한 요금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분기마다

공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요금 감면 신청을 받은 수도사업소장은 수질검사 결과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1. 수질검사결과 문서관리 및 요금 감면 관련 결재 소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고 규정하였고, 제4항에 따르면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5항에 따르면 제4항에 따라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조직 관계 법령 또는 업무분장된 담당자 외에 그 문서의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제6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부여한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문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이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위조·변조 방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없으면 그 문서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발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불분명할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수도사업소 중수도 요금감면 담당자가 중수도 요금 감면 신청자의 분기별 수질검사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중수도 요금의 감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수신(접수)한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접수 처리하여야 하고, 결재권자에게 공람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감사대상기간(2019. 3월 이후, 이하 같다) 중 수도사업소별 중수도

요금 감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사업소 및 ㉹㉹㉹㉹사업소에서는 중수도 요금 감면 신청자가 제출한 수질검사결과를 접수 처리하지 않아 요금 감면을 위해 중요한 확인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중수도 요금 감면은 수도사업소장의 권한 사항으로 요금 감면 처리 담당자는 요금 감면 신청 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결정사항을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 처리하여야 함에도 ○○○○사업소(20**년도 *분기만 시행)와 ㉹㉹㉹㉹사업소 및 ●●●●사업소의 중수도 요금 감면 담당자는 제출된 수질검사결과에 대한 요금 감면 결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보고(결재문서 등) 없이 요금을 감면 처리하였다.

2. 중수도 요금 감면 부적정

가. 요금 감면 부적정 현황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에서는 요금 감면 신청자인 △△△△(주)가 감사대상기간 중 제출(20**, *분기 ~ 20**, *분기)한 수질검사결과가 20**, *분기를 제외한 모든 분기의 검사 결과에 있어서 해당 중수도 주용도(▲▲▲▲용수, 공장 ▲△수)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기간 중 중수도 관련 요금을 감면하였고, 20**, *분기 ~ 20**, *분기까지는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총 00원을 부적정하게 감면하였다.

나. 실무담당자 및 책임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A 등 6명은 2019.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에서 중수도 요금 감면 관련 실무담당자 및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팀명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현직급	성명	근무기간	현직급	성명	근무기간
□□팀	A		2019.2.7.~2022.1.12.	C		2019.2.7.~2019.8.4.
				D		2019.8.5.~2020.7.19.
	B		2022.1.13.~현재	E		2020.7.20.~2022.1.12.
				F		2022.1.13.~현재

A와 B는 중수도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중수도 관련 요금 감면을 위해 관내 중수도 운영자인 △△△△(주)에서 분기별 수질검사결과를 제출하였을 때, 중수도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그러나 A는 20**년 *분기부터 20**년 *분기까지 △△△△(주) 제출한 수질검사 결과가 20**년 *분기를 제외한 모든 분기의 결과에서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음에도 감사대상기간인 2019. 3월부터 20**. *월까지 및 20**. **월부터 20**. **월까지의 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하였고, 20**. *분기부터 20**. *분기까지는 △△△△(주)에서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수질검사 결과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20**. *월부터 20**. **월까지의 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하여 총 00원을 부당하게 감면 처리하였다.

또한 B도 담당 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관내 중수도 운영자인 △△△△(주)에서 20**년 *분기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수질검사 결과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20**. *월부터 20**. *월까지의 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총 00원을 부당하게 감면 처리하였다.

C, D, E, F는 중수도 관련 부적정 요금 감면이 발생한 기간 ㉠㉠㉠㉠사업소의 ㉠㉠팀장으로서 팀 소관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결제가 올라오지 않아 요금 감면 처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업무 담당자가 중수도 관련 요금을 부적정하게 감면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았다.

상기 관련자들은 문답조사 과정에서 위 중수도 관련 요금 감면이 부적정했던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중수도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대하여도 인정하며,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사항과 관리에 소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중수도 관리 소홀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 △△△△(주)에서는 20**. **. **.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부평구청 ●●●●과에 통보하였고, 부평구청 ●●●●과에서는 20**. **. **. △△△△(주)의 중수도 설치 결과를 인천광역시장(目目目과장(現 ㅁㅁㅁ과장)) 및 ㅁㅁㅁㅁ사업소장(現 ㉠㉠㉠업소장)에게 통보하였다.

△△△△(주)에서 중수도를 설치하여 부평구청 ●●●●과에 설치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된 사항이 수리된 시점은 20**. **. **.이며, 당시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1. 6. 9. 제정,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하수도법」(2010. 10. 16. 개정, 시행)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설치 결과를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중수도의 시설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규칙」(2010. 7. 1. 개정, 시행) 제19조에 따르면 중수도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20조에 따르면 중수도 설치·관리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중수도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후 2011. 6.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보는 사항과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구청장 등이 한 이행명령 및 그 밖의 설치 결과의 통보 등 구청장 등에게 한 행위는 제9조에 따라서 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20**. **. **. 부평구청 ●●●●과에서 △△△△(주)의 중수도 설치 통보 사항을 수리하여 통보한 사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것으로 보며, 부평구청 △△△△과에서는 중수도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했으며, △△△△(주)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설·관리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함에 따라, 부평구청 ○○○○과에서는 △△△△(주)가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시설을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었으며, 2014. 5. 12. 환경부에서 제정한 「물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제정)」에 따라 △△△△(주)에 중수도 유지관리 사항을 안내하여 해당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했고,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중수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했어야 하며, 지도·점검결과를 매반기 익월 5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했어야 한다.

2022년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주)가 ○○○○사업소에 제출한 분기별 수질검사결과의 부적합 사항 및 일정 기간(20**.*분기 ~ 20**.*분기) 수질검사결과가 미제출된 사항이 확인되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라 20**.*월 이후 △△△△(주)에서 부평구청에 제출한 수질검사결과 통보 사항에 대하여도 확인하고자 했으나, △△△△(주)는 해당 기간 중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분기별 수질검사결과를 부평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중수도 설치 이후 한 번도 부평구청에 수질 검사결과를 통보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부평구청 ○○○○과에도 △△△△(주)의 수질검사결과 통보사항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부평구청 ○○○○과에서는 관내에 중수도 설치·운영자가 없다고 답변하여,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부평구청 ○○○○과부터 해당 경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부평구청 ○○○○과에서는 △△△△(주)의 중수도 설치 통보에 대하여 20**.*.*. 수리 통보한 후 20**.*.*. 이후 중수도 관련 법이 「하수도법」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주)가 중수도시설을 기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신고 수리 통보 당시 「하수도법」에는 정기 점검 규정이 없어 시행하지 않았으며, 2014년 5월 환경부에서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 지침」 신설 후 정기 점검을 시행했어야 하나 △△△△(주)가 중수도시설을 기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중수도 관련 업무 분장사항은 20**. *. **.까지는 ●●●●과(㉠㉠㉠㉠팀)에 분장되었다가 20**. *. **.이후 현재까지는 중수도 관련 업무가 분장되지 않았고, 20**. *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주)에서 주용도 변경처리신청을 함에 따라 ●●●●과(㉡㉡㉡㉡팀)에서 현장답사 후 변경처리 신고 수리 통보 및 중수도 관리기준 이행을 안내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부평구청 ●●●●과에서는 관내 중수도 설치·운영자인 △△△△(주)의 중수도 설치 결과 통보사항에 대하여 20**. **. **. 인천광역시장에게 관련 업무 참조사항을 통보한 이후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라 중수도 설치·관리자가 분기별 수질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안내하지 않았고 지도·점검 등도 이행하지 않는 등 중수도 설치·운영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평구 ●●●●과에서는 기 제출한 중수도 관리 소홀 관련 경위에 대하여 정정을 요청하였고,

또한 △△△△(주)는 산단 내 입주한 사업장으로 19**. *. **.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하여 영업 중인 사업장이어서 중수도 시설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으로 볼 때 20**. **. **. 당시 △△△△(주)는 법적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이 아님을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고, △△△△(주)는 수도법(시행 2001. 9. 29.) 부칙 제2조에 따라 20**. **. **. 당시 중수도 설치 법정의무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가 규정된 새로운 법령에 대한 안내 및 점검 등의 관리, 사

업자의 수질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사유를 구의 업무 소홀로 인한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중수도관련 업무는 20**. *. **. 업무분장에 누락되기 전까지 업무분장이 되어 있었으며, 이후 누락으로 인한 업무 손실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금번의 타 기관 감사를 계기로 20**. *. *. 업무분장에 포함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후 사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 **. **. 부평구청 ●●●●과에서 인천광역시장(■■■■과장) 및 ■■■■사업소장에게 통보한 문서에는 △△△△(주)로부터 「하수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중수도 설치 결과를 제출함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하며 관련업무에 참조 요청함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중수도의 설치사항이 당시 「하수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설치와 통보사항이었음을 인정한 것이고,

중수도 설치 결과를 인천광역시장(■■■■과장) 및 ■■■■사업소장에게 관련 업무 참조사항으로 통보한 것은 당시 「하수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 6. 8. 제정, 2011. 6. 9.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종전 「하수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주)가 제출한 중수도 설치 결과의 통보사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평구청 ●●●●과에서 제출한 의견인 △△△△(주)의 중수도 설치 결과 통보사항은 중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법적 기준이 제정된 당시의 경과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황을 관리하지 않았고, 중수도 관련사항을 업무분장에서 제외한 이후에도 업무 손실이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주의] 중수도 요금 감면과 관련한 문서의 관리 및 결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수도 요금 감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징계·훈계] 관련자 중 A, B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C, D, E, F를 훈계
처분합니다.

[통보] 중수도 관련 △△△△(주)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감면된 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총 00원의 추가 징수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중수도 설치 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중수도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위원회 운영·관리 소홀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팀)

내 용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의1에 따라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에 따라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상수도사업본부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 및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19. 1.부터 2022. 5.까지 17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부에서는 20**, **, **. 징계 심의를 위한 상수도사업본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대면 개최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인사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결재 이후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관리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주의] 인사위원회 운영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 주의 요구

제 목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 ⊕⊕부, ●●●●사업소

내 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또한 같은규정 제10항에 따르면,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및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의 가족돌봄휴가 활용기준에 따르면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신청시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고,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가족돌봄휴가 승인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증빙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20**년 ~ 20**년 *월까지의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 현황 및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2명의 직원이 가족돌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연가보상비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는 바, 해당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에 대한 개인별 환수금액은 00원이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정] 특별휴가 부적정 사용자에게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지급액(00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회수처리 하시기 바라며,

[주의] 직원의 특별휴가 사용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출장여비 과다(부당) 지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 ⊕⊕부, ●●부

내 용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르면“근무지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 기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 *월 ~ 20**. *월까지 상수도사업본부의 근무지내 출장 내역 및 공용차량 운행 내역을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①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에 대해 여비를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②실제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임에도 여비를 1만원으로 감액하지 않고 2만원으로 지급하는 등 총 **건 00천 원의 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정] 과다 지급된 출장여비(총 00원)를 회수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장여비 지급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

[수 범 사 례]

- ❖ 수돗물 통계분석으로 유수율 향상, 선제적 물낭비 방지로 재정 건전성 향상
- ❖ 실시간 수도 사용량 측정 시스템 구축으로 대시민 수도행정 서비스 향상 등

□ 사업개요

- 약 43만전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물낭비 방지 및 사회안전망 기여
- 유수율 저조, 난검침 등 수도전에 통신 단말기 설치 후 실시간 사용량 측정

□ 추진현황

-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안정성 확보 및 예산 운영효율 극대화
 - (구축비율) 0.24% '19년이전 → 14.5% '21년 → 26.1% '22년 (전체수도전 436,711전)

[단위: 전, 백만원]

구 분	합 계	시범사업	2021년(1차)	2022년(2차)	2022년(3차)
사 업 규 모	114,119	1,043	63,361	37,072	12,643
사 업 비	합 계	-	8,572	7,039	3,838
	통신 단말기	9,816	-	3,839	3,618
	수도 미터	9,145	-	4,245	3,421
	원격영상검침 등	488	-	488	0
사 업 기 간	-	'19. 이전	'20.10. ~ 21.8.	'21.11. ~ 22.6.	'21.12. ~ 22.6.
대 상 지 역	-	영종,강화 일부	난검침 지역 등	강화전체 북부,남동부 일부	북부 일부

○ 운영시스템 구축

- 시스템명: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운영시스템
- 사 업 비: 493백만원 (국비 50/시비 50)
- 주요기능
 - 각 수용가 시간대별 검침값 수집, 관리
 - 이상 유량 분석을 통한 독거세대 위기예측, 과다, 누수 발생 분석
 - 타 시스템 계측 데이터 연계를 통한 유수율 분석 지원 등

※ 운영시스템 사용 화면



□ 주요성과

○ 재정 건전성 향상 체계 마련

- 사용량 분석 시 기존 월 1회 분석에서 시간대별 분석 체계 구축
- 이상 유량(과다, 누수 등) 신속 파악으로 선제적 물낭비 방지
- 인정검침(난검침, 원거리) 사례 감소로 요금산정의 정확성 개선

○ 인력 운영효율 향상

- 원격 수도검침 시행 후 인력 검침원 **명 축소(업무대체 전환완료)
- 대체업무 수행을 통한 추가 고용 수요 감소

○ 사회안전망 강화 기여

- 미추홀구 사회복지과 협의를 통한 독거세대 47가구 관리 중

○ 시민 만족도 상승

- 120미추홀콜센터 요금관련 민원 23.3%, 시설관련 민원 48.8% 감소
- 인터넷 검침 수용가 255세대 원격 검침 전환에 따른 민원편의 증대

□ 기대효과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운영비용 절감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 지속적인 취약계층 관리대상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IT기술을 활용, 물사용 정보의 신속한 공유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
- 전국 최대 원격 수도검침 모범적 운영을 통한 인천의 위상 제고

- ❖ 정수처리 공정에서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후단 공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혼화응집공정에 대한 최적화 필요

□ 추진배경

- 환경부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정수처리공정에도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정수처리시스템 적용과 신속한 사고방지 및 대응을 위한 스마트 관리 체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정수처리 공정에서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후단공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혼화응집공정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
 - 기존에는 정수약품을 주입시 Jar-test에 의해 응집제 주입량을 판단
 -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기존 Jar-test를 통한 약품주입 방식으로는 하절기 급변하는 원수 유입시 실시간 대응 곤란
 - 또한 CCTV 및 4시간여의 체류시간이 소요되는 침전효율을 통해 응집 공정의 효율이 저하되는 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하는 데 한계 있었음

□ 추진현황

- 2021. 01.: 적용사례 및 장비특성, 안정성, 유지관리 측면 비교검토
- 2021. 02. ~ 04.: 조달 계약추진, 현장설치 및 시운전
- 2021. 05.: 응집약품 자동주입시스템 운영
- 2021. 12.: 응집약품 자동주입시스템 운영결과 보고



응집지 현장 설치



공정제어실 자동제어 화면구성

□ 주요성과

- 응집약품 자동주입시스템 도입후 5월~11월까지의 운영 결과 전년도 대비 응집약품 주입률은 PAC 3종 기준 9.7% 저감
- 응집약품 자동주입시스템 운영을 통한 최적주입시 약품비 절감 효과는 운영 기간 중 전년도 대비 16%(46,115,316원)를 나타냄
- 약품 사용량이 저감될 경우 약품에 의한 약품슬러지 발생량도 함께 저감되므로 슬러지 처리비용도(6~8%) 저감될 것으로 예상

□ 기대효과

- 최적의 약품 투입과 응집플럭 실시간 감시를 통한 약품 미주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최고 품질의 인천 하늘수 생산·공급에 기여
 - 기존의 CCTV 감시를 보완해 약품주입 후 실제 성장하는 플럭의 성장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 약품 미주입 외 다른 수질 인자가 응집효율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가능

- ❖ 건설사업관리용역 SOQ평가 참여업체의 다양한 시공 제안사항 등을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실시설계에 검토·반영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공사리스크 최소화 및 19억 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재정건전화에 기여

□ 사업 개요

- 사업명: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 사업기간: 2022. 6월 ~ 2026. 5월
- 사업규모: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Q=380천 m³/일
- 사업내용: 활성탄흡착지, 오존접촉지, 중간가압장 건설
- 사업예산: 668억 원(70% 국비 매칭)

□ 건설사업관리용역 SOQ참여업체 시공 제안사항

- 용역명: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SOQ 참여업체: (주)●■◇ 외 7개사

【시공 제안사항】

순번	(주)●■◇ 외 7개사 시공 제안사항	
	실시설계 검토결과 문제점	개선안
1	· (토공 가시설 변경) 구축물별 3개로 독립분산 배치	· (토공 가시설 변경) 일체식 가시설로 배치 조정
2	· (토공 구조물 시공개선) 장대철근에 대한 가공·조립 계상으로 공사비 과다 계상 · 철근 재료표 수량 오류	· (토공 구조물 시공개선) 장대철근에 한하여 조립 비용 계상 · 철근 재료표 수량 정정
3	· (토공 구조물) 가시설 코너 스트러트가 벽체에 위치하므로 수직 철근 길이 부족	· 구조물 벽체 일부 철근(수직) 이음 개선
4	· 다수의 스트러트 적용으로 구조물 수밀확보 곤란	· 현장여건을 고려한 흠막이 가시설 공법 변경
5	· 활성탄 세척수 등의 배출을 위한 점검구 미설치	· 활성탄 흡착지 유출관 말단에 점검구 설치
6	· 유량조절지 내부 웨어 인상 수문설치(단수시 분리)	· 철판등으로 웨어 인상, by-pass관으로 변경
7	· (토공 가시설) 시공이음 과다로 인한 수밀성 및 시공성 저하	· Coner-Strut(4개소), 중첩구간(11m) 축소
8	· (구조물공) 단계별 구조물 공사에 따른 가시설 부재와 간섭으로 철근조립 어려움	· (구조물공) 가시설재 간섭부의 단계별 구조물 시공시 철근이음(커플러) 시행

□ 추진 현황

- 건설사업관리용역 SOQ평가 참여업체의 시공제안 8개 선정(상수도사업본부)
 - * (검토결과) 시공제안사항 중 타당한 제안 8개 자체 선정
- 2021.11.19.: 시공제안사항에 대한 검토 지시(본부 → 설계사)
- 2022.12.17.: 시공제안사항 및 설계도서 검토 지시(본부 → 건설사업관리단)
- 2022.12.28.: 건설사업관리단 검토결과 제출(건설사업관리단 → 본부)
 - * (검토결과) 8개중 4개 반영(채택율: 50%), 또한 검토과정 중 설계오류사항 확인
- 2022. 1.28.: 시공제안사항 검토결과 제출(설계사 → 본부)
 - * (검토결과) 8개중 1개 반영(채택율: 12.5%)
- 2022. 2.14.: 합동 설계검토회의 개최(참석: 시설부, 건설사업관리단, 설계사)
 - (회의목적) 시공제안사항 등에 대한 설계검토 및 이견사항에 대한 합의도출
 - (회의주관) 본부 시설부(고도정수팀)
 - (회의결과) 시공제안사항중 4개 반영(채택율: 50%), 설계오류 수정(3건), 건설사업관리단 의견(19건) 반영 등
- 2022. 2.24.: 회의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및 설계수정 지시(본부 → 설계사)
- 2022. 4. 7.: 실시설계 수정한 최종 성과품 납품(설계사 → 본부)

□ 기대효과

- 시공제안사항을 설계 반영하여 사업예산 10억 원 절감
- 설계 오류 수정(3건)을 통한 사업예산 9억 원 절감
- 설계 누락 사항* 반영하여 부실설계 방지
 - * (누락 사항) 종합시운전비, 법개정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경비 등